

보건분야-보고서

연구원 2000-56-268

H-RD-1-2000-56-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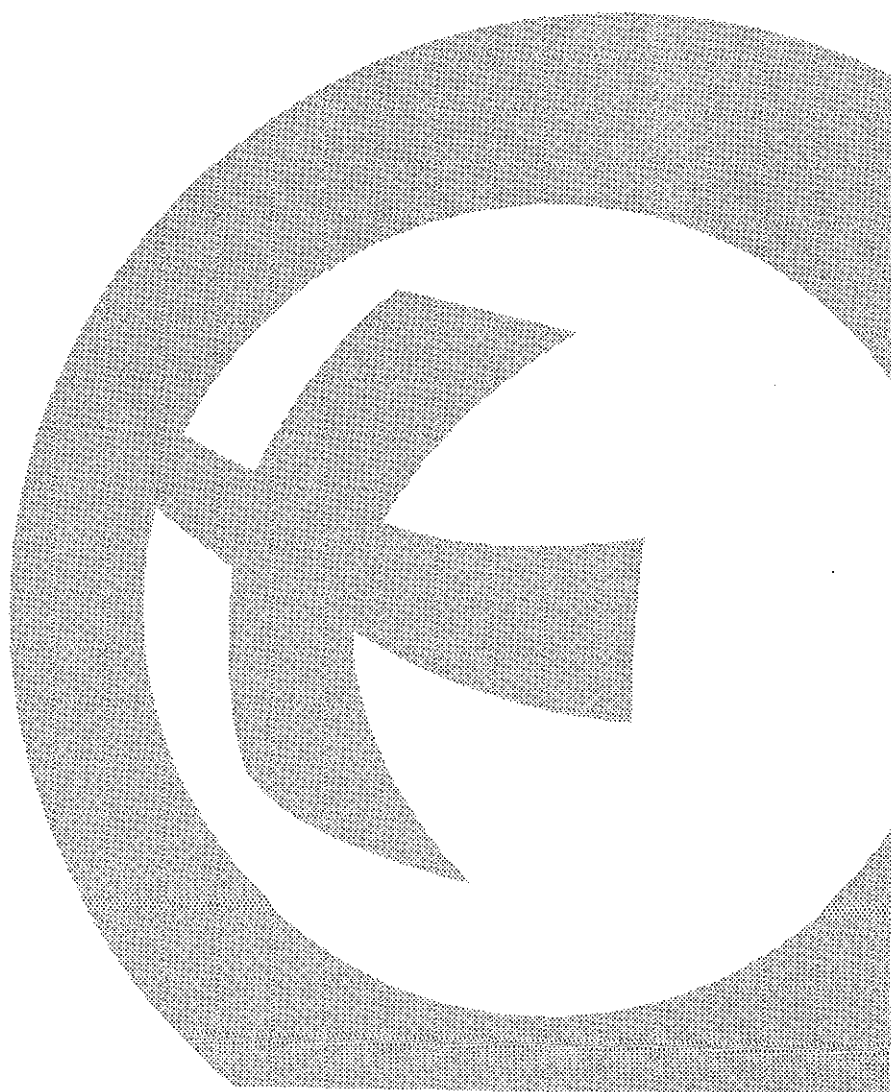
2000. 3

산업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직업정보체계의 개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1999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산업보건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직업정보체계의 개발”에 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년 3월

연구책임자	정 해 관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공동연구원	최 병 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동연구원	박 기 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공동연구원	고 재 욱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차 례

I. 연구배경	1
II.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III. 한국표준직업분류	7
1. 연혁	7
2. 제5차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9
3. 개요	10
IV. 연구방법	18
V. 연구결과	21
1. 직업정보의 분류	21
2. 전 국민의 직업정보체계	22
3. 직업정보와 상병자료의 연계	29
4. 통계작성 담당기관	30
5. 기타 필요한 조치	30
부록 1. 한국표준직업분류	35
부록 2.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93
부록 3.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113
부록 4. 진료비명세서	123

I. 연구배경

사고성 산업재해 및 직업관련성 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직업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업보건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한 근로자의 직업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직업 등 여러 특성에 따른 각종 상병의 발생률 및 유병률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관련성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진폐법)에 의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요양 및 보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64년부터 실시된 산재보험법은 그 적용대상자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많고(20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될 예정임), 적용대상 근로자의 적용대상 상병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이 아닌 의료보험(2000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바뀜)에 의해 요양이 실시되는 등 직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업장의 산업 분류에 따라 통계가 작성되고 산재보험 성립 기호도 사업장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노동사무소코드 3자리 - 지역코드 2자리 - 사업장코드 5자리) 근로자의 구체적 직업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다른 상병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의 1, 2위를 차지하는 순환기계 질환과 암이 직업과 관련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및 사망신고서나 의무기록에는 사망자나 환자의 직업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통계청, 1999; 임현술 등, 1998). 물론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료받을 당시에 직업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고성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직업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질환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질환이 확인될 당시의 직업뿐만 아니라 과거 직업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직업성 암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은 사례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80년에 시작된 전국암등록사업에서도 등록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적고(1998년 말 현재 전국 154개 병원) 입원환자 중심이라는 한계로 전체 암환자의 일부만이 등록되고 있는데, 등록된 환자라도 극히 일부에서만 직업을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그 직업마저도 신뢰하기 곤란하다(한국중앙암등록본부와 보건복지부, 1998).

1977년부터 의료보험이 시작되어 1989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를(의료보호법 적용) 비롯하여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나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은 5인 이상 상용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과(1999년 6월 30일 현재 대상자 16,240,859명),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공교의료보험, 1999년 6월 30일 현재 대상자 4,905,242명), 그리고 이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지역의료보험으로(1999년 6월 30일 현재 대상자 23,515,042명) 나뉘어져 있다. 과거에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인 경우 사업장이나(여러 개 사업장이 하나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가능) 지역별로(시/군/자치구)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적용대상자의 자격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교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1998년 10월 1일 의료보험 통합이 시작되면서, 공교의료보험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하나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여 전국

161개 지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79년 1월부터 시작된 의료보호도 과거에는 시/군/구 단위로 시행되었으나, 1990년부터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거의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00년 7월 1일을 기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140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보험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2000년 7월 1일부터는 하나의 법에 의하여 명실상부하게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보험급여 심사도 현재는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2000년 7월 1일부터는 별도로 설립되는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전 국민의 자격관리 자료에 직업정보를 포함시켜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하는 보험급여 내역과 연결하여 분석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고도 막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어 산업보건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의료보험의 통합작업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1988년 시작), 고용보험(1995년 시작)의 통합도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I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사고성 산업재해와 직업관련성 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이들 질환의 정확한 유병률 및 발생률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만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끊임없이 그 효과를 평가하여 산업보건정책을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법률을 통하여 직업관련성 질환의 조기발견에 노력하고 있고, 요양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64년부터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직업적 원인에 의한 질환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중심보다는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직업관련성 질환자의 통계가 사업장의 산업분류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무관리직과 생산직 등 실제 그 근로자의 구체적 직업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관련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해 요양을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요양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보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요양자의 직업을 파악할 수 없고 단지 의무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의료인의 인식 부족으로 기록이 누락된 경우가 다반사이고,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관리주체가 달라 서로의 자료가 호환되지 않는 관계로 이 둘을 통합한 통계마저도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통합되는 한편, 4대 사회보험의 통합도 논의되고 있다.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이 실

시된 상황에서 내용상 3가지의(직장, 공교, 지역) 의료보험이 단일화된 의료보험으로 통합될 경우 인적사항과 연계된 전 국민의 상병자료가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 전 국민의 직업정보를 포함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산업보건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커다란 의의가 있는 전 국민의 직업정보라 하더라도 의료보험의 인적사항에 직업정보를 새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이고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즉, 사용할 직업의 분류체계, 직업정보의 파악 및 신고방법(주체, 시기, 매체), 직업정보의 관리방법(분류 및 기록 주체, 기록 매체, 관리 주체), 직업분류의 정확도 향상 방안, 통계작성 담당기관, 직업정보와 상병자료의 연계 등 각각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개발, 적용해야만 차질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정보체계의 개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할 직업의 분류체계, 직업정보의 파악 및 신고방법(주체, 시기, 매체), 직업정보의 관리방법(분류 및 기록 주체, 기록 매체, 관리 주체), 직업분류의 정확도 향상 방안, 통계작성 담당기관, 직업정보와 상병자료의 연계 등 각각에 대해서 검토한 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전 국민의 직업정보체계는 궁극적으로 사고성 산업재해와 직업관련성 질환의 감시(Surveillance) 및 예방정책 수립과, 그 예방프로그램의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을 통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는 전체 그리고 구체적인 위험집단을 모른 채 산재보험법에 의한 그것도 전수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결과에 의한 직업정보체계를 활용할 경우 정확한 위험집단 및 모집단에 근거한 각 질환별 유병률과 발생률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병률 및 발생률의 직업별 비교를 통하여 산업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는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공공정책의 기본방향과도 일치하게 된다.

또한 전 국민에 대한 직업코호트가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 및 직업 변화에 따른 사고성 산업재해와 직업관련성 질환의 변화를 추계하거나 유추할 수 있게 된다.

Ⅲ.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청장의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 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것이다(통계법 제3조). 또한 통계는 통계작성기관 및 다른 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업무수행상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통계법 시행령 제2조), 산업보건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하여 전 국민의 직업정보를 상병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도 통계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때 사용하는 통계자료의 분류, 집계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통계법 제17조).

따라서 본 연구의 성격상 필수적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통계청, 2000).

1. 연혁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고용관련 통계조사를 통해 얻은 직업정보를 분류하고 집계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국제권고분류체계(ISCO)를 근거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직업분류로는 1960년 내무부 통계국에서 국세조사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통계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면서 1958

년에 제정하여 각국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한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1963년 10월 1일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1966년, 1970년, 1974년, 1992년, 2000년 등 5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년의 제2차 개정은 1968년에 개정된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하였으나 국제표준직업분류와는 달리 4단위의 세분류를 하지 않고 3단위의 소분류까지만 하다가, 1974년의 제3차 개정부터 세분류를 하였다. 그 후 1988년의 제14차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확정된 국제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다시 개정하였는데, 국내 실정에 맞게 세분류 다음에 세세분류를 신설하여 노동행정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직업을 각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국제표준교육분류를 적용한 직무수행능력(직능)에 따라 분류하되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10개의 대분류, 28개의 중분류, 116개의 소분류, 397개의 세분류 및 1,567개의 세세분류인 5단계의 체계로 분류하였다(<표 1>).

1992년 이후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많이 출현한 반면, 산업의 기계화에 따라 쇠퇴한 직업도 많아져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0년 1월 7일에 통계청 고시 제2000-2호로 확정, 고시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000년의 제5차 개정에서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의 5단계로 직업을 분류하여 대분류 11, 중분류 46, 소분류 162, 세분류 447, 세세분류 1,404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2. 제5차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기술변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산업 등에서 발생한 새로운 직업을 신설하였으며 직업의 전문화, 단순화를 반영하여 전문직은 세분하였고 생산관련 직업은 통합하였다.

- 우리나라의 사회실정과 직업분석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여 대분류의 판매직과 서비스직을 세분하고 중, 소, 세분류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금융전문가를 신설하고 라디오 및 TV 아나운서, 디자이너, 영양사 등을 준전문가에서 전문가로 이동하였다. 또한 행정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여 행정 및 기업경영에 종사하는 직업의 분류체계를 신설, 조정하였다.

- 맹인학교 교사, 사업능률 전문가, 보모 및 보도석재 포장원 등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현실 이용도를 제고하였다.

- 타자원, 버스안내원, 전통적 촌장 등 쇠퇴한 직업 및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은 통폐합하였다.

- 관리자, 전문가, 판매직 등에 대한 분류기준과 분류단계별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현재보다 더 표준적으로 직업에 관한 각종 통계를 작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 및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

구분	국제표준직업분류 (1988년)	한국표준직업분류	
		1992년 개정	2000년 개정
대분류	10	10	11
중분류	28	28	46
소분류	116	116	162
세분류	390	397	447
세세분류	-	1,567	1,404

3. 개요

가. 직업의 정의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직업분류이며, 우리나라의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이다.

이러한 직업분류에서 직무(Job)와 직업(Occupation)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직무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도록 설정, 교육, 훈련된 업무'로 직업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데, 계속적인 일이란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하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인데 유사한 직무란 '동일한 형태의 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재산 수입이 있는 경우
- 연금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 경매, 경륜 등에 의한 배당금 수입이 있는 경우
-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 자기 집에서의 가사활동
-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 시민봉사활동 등 무급 봉사적 일에 종사하는 경우
- 법률 위반행위나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나. 분류기준

직업분류는 수행된 일의 형태인 직무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직능(직무수행능력, Skill)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직능은 교육, 훈련, 경험 또는 선천적 능력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간 숙련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자격은 시험합격 등과 같이 공식적 기준을 충족할 때 부여되는 것으로 직능과는 다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의 국제권고분류체계에서 정의한 직능 수준은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직업분류는 정규교육 수준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정 업무의 수행능력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능은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직능이 정규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국제표준교육분류상의 교육과정 수준과는 다음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

1) 제1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5 - 7세에 시작하여 6년 정도 시행되는 국제표준교육분류상 제1수준 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이나 훈련을 필요로 한다. 최소한의 문자 이해와 수리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수준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제2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1, 12세에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거나 14, 15세에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국제표준교육분류상 제2, 3수준 교육과정(중등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이나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직무훈련과 실습과정이 요구되며, 실습과정은 정규훈련을 보완하거나 정규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다.

3) 제3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2, 3년 정도 계속되는 국제표준교육분류상 제5수준 교육과정(기술전문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이나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과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규훈련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4) 제4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국제표준교육분류상 제6, 7수준 교육과정(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이나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위와 같은 4단계의 직능 수준을 11개 대분류 항목 중 9개 항목에 적용하였으며, 대분류 0인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대분류 A인 '군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직능수준과 무관

대분류 1 전문가 : 제4직능 수준

대분류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제3직능 수준

대분류 3 사무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대분류 5 판매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대분류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대분류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대분류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 제1직능 수준

대분류 A 군인 : 직능수준과 무관

다. 분류원칙

1) 포괄적 업무의 분류

동일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음식의 조리과 제공이 하나의 단일 직무로 되어 조리사업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적 업무로 분류될 수 있다. 직업분류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직업 및 직업군을 결정하였으므로, 어떤 직업의 경우에는 직무범위가 직업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분류원칙을 적용한다.

- 수직 우위 원칙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직무내용과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내용상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수행하는 직무가 서로 다른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을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분류한다.

- 생산업무 우선 원칙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빵을 굽는 제빵원이 빵을 제조하고 동시에 이를 판매하였다면 판매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빵원으로 분류한다.

2)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취업시간이 많은 직업을 선택한다.
- 취업시간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선택한다.
- 위의 두 가지 원칙으로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의 직업을 선택한다.

라. 특정 직종의 분류

1) 관리, 행정 및 입법 기능 수행업무 종사자

관리, 행정 및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대분류 0인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주된 업무가 정책결정이나 법규 등의 입안 업무를 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및 공사기업 감독자와 농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관리자, 자영업주 중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2) 품질검사 직종

주된 업무가 제품의 품질기준과 제조 명세사항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세분류 2372인 '산업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로 분류하나, 제품을 기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각적 확인검사를 주로 하는 시험 및 검사원은 그 제품의 생산자와 함께 분류한다.

3) 자영업주 직종

자영업주는 수행하는 일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고용상태에 따라 구분된 개념이다. 따라서 직업분류에서 자영업주의 직업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하는 일과 유사한가, 아니면 동일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가에 따라 분류한다.

4) 감독 직종

반장 등과 같이 수행되는 일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기술적인 통제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감독자는 그 감독대상인 근로자와 동일 직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주된 업무가 자기 감독 하에 있는 일이나 근로자의 일상 작업활동을 기획, 조직, 통제, 지시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관리직으로 보아 중분류 02인 '행정 및 경영 관리자' 또는 중분류 03인 '일반 관리자'로 각각 분류한다.

5) 지도 직종

계속적인 관찰, 평가, 지도에 의한 직무 훈련업무를 주로 하는 지도직 종사자의 직업은 그들이 지도하는 특정 직종, 기능 또는 기계조작 종사자로 분류한다.

6) 연구 및 개발 직종

연구 및 개발 업무 종사자는 대분류 1인 '전문가'에서 그 전문분야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연구자가 교육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육전문가로 분류하여야 한다.

7) 군인 직종

군인은 별도로 대분류 A인 '군인'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수행된 일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보다는 자료수집상의 현실성에 따라 규정된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군부대는 중분류 75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분류한다.

8) 기능원과 기계조작원의 직능 관계

하나의 제품이 기능원에 의해 제조되는지 또는 대량 생산기법을 유도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제조되는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직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기능원은 재료, 도구, 수행하는 일의 순서와 특성 및 최종 제품의 용도를 알아야 하는 반면 기계조작원은 아주 복잡한 기계나 장비의 사용방법과 기계에 어떤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대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기계조작원은 생산품의 명세서가 바뀌거나 새로운 기법이 도입될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 훈련을 거쳐야 한다.

직업분류에서는 기술개발의 차이에 따라 요구되는 이러한 직능 차이를 반영하여 대분류 7과 8을 설정하고 대분류 7인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에서는 석재부설원, 목수, 기계설치원, 도자기제조원, 장식도장원, 나무조각원과 같은 장인 및 수공 기예성 직업을 분류하였고, 대분류 8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는 제품 가공과 관련된 기계지향성 직업을 분류하였다.

IV.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통합되는 계기를 맞이하여 산업보건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정보체계의 개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사업장별 정보체계인 산재보험의 한계를 뛰어 넘어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과 그 직업에 의한 상병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체계는 단순한 개발에 그쳐서는 활용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그림 참조).

본 연구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다음의 각 항목을 검토, 결정하였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확인할 수 없는 세부적인 절차나 서식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의료보험법(직장의료보험) 및 국민의료보험법(공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의 규정을 활용하였다. 이는 현재의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세부 절차나 사용될 서식 등은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이다.

1. 직업정보의 분류

- 연구목적 및 통계적 관점에서

- 5단계 분류체계의 단계별 필요성 및 현실적 적용 가능성

2. 전 국민의 직업정보체계

가. 직업정보의 파악 및 신고

- 직업정보의 파악 및 신고의 주체, 사유, 시기, 매체
- 과거 직업정보 포함 여부
- 직업정보의 최초 파악 및 신고 시점

나. 직업정보의 관리

- 직업정보의 분류 및 기록 주체
- 직업정보의 기록 매체

다. 직업분류의 정확도 향상

3. 직업정보와 상병자료의 연계

4. 통계작성 담당기관

5. 기타 필요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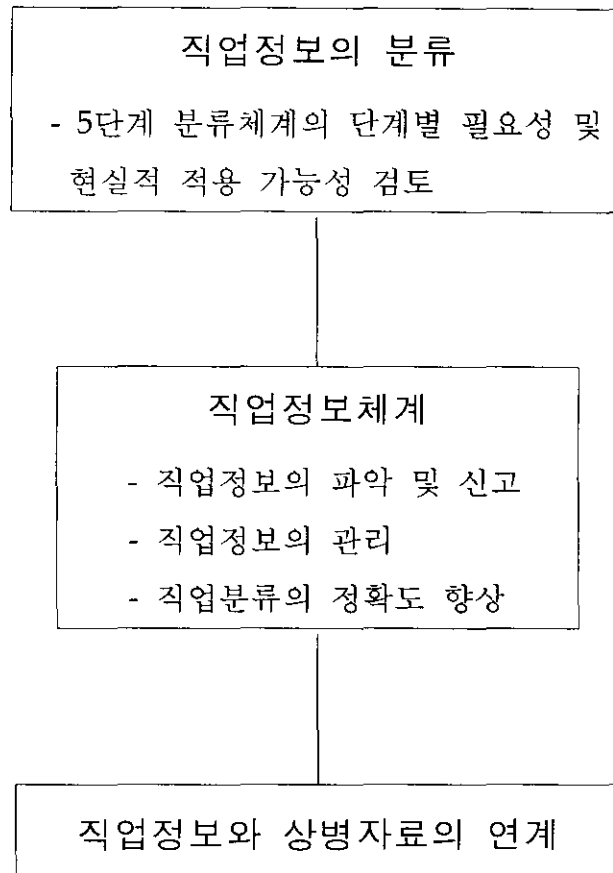


그림. 본 연구의 진행 흐름도

V. 연구결과

1. 직업정보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이용하여 전 국민의 직업정보를 분류하고자 하였다(부록 1). 이는 통계법에 의한 강제 규정일 뿐만 아니라 통계 및 노동행정 측면에서 다른 자료와의 호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한국표준직업분류의 5단계 분류(세세분류)를 모두 사용할 지 아니면 2, 3, 4단계 분류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사용할 지 결정하여야 한다.

5단계의 세세분류가 아닌 개략분류를 사용할 경우 기록 및 분류가 간편하고 분류 오류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 개략분류를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직업정보가 사장될 수 있고, 향후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개정될 경우 일부 직업정보의 경시적 비교가 불가능할 수 있다. 물론 개정 후에도 동일한 분류체계로 비교할 경우 비교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새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1>에서 보다시피 1992년 제4차 개정과 2000년의 제5차 개정을 비교할 경우, 세세분류 항목이 1,567개에서 1,404개로 줄어든 반면 나머지 4가지 분류 항목은 모두 늘어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 사업장을 선정하여 의료보험 담당자로 하여금 1992년의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을 세세분류하도록 한 결과 분류 오류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전 국민의 직업정보와 상병자료의 장기간에 걸친 연계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분류 오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늘어났다 하더라도, 산업보건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경시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전 국민의 직업정보는 세세분류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전 국민의 직업정보체계

가. 직업정보의 파악 및 신고

1) 직업정보의 파악 및 신고 주체

이렇게 채택한 분류체계는 실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전 국민의 실제 직업과 관련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우선 직업의 파악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파악 및 신고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현재 직장의료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과(부록 2-1, 2-3)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상실을(부록 2-2) 소속 의료보험조합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교의료보험에서는 공무원 및 교직원(피보험자)이나 그 피부양자가 새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각 지사에 의료보험증의 발급을 신청하고(부록 3-1),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및 학교경영자가 해당 피보험자의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게 되어 있다.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각 지사에 의료보험증의 발급을 신청하고(부록 3-1), 같은 세대의 모든 지역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현행 직장 및 공교 의료보험 피보험자)는 그 피부양자를 포함하여 사용자(현행 사업주, 기관장, 학교경영자)가, 그리고 지역가입자(현행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는 세대주가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 자격변동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입자의 자격변동 내역을 신고시

신고 주체자가 가입자의 직업정보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여기서 가입자의 직업정보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모두의 직업정보까지도 신고대상으로 할 지 결정하여야 한다¹⁾.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이 바뀔 경우 직업정보의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직장가입자(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교직원)가 될 수 없는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직업정보는 파악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9년 12월 말 기준으로 직장의료보험 및 공교의료보험 적용대상자 중 각각 67.8% 및 71.7%가 피부양자이었고, 지역의료보험 적용대상자에서는 세대당 세대원이 평균 2.9명이었다. 따라서 피부양자나 세대원 상당수가 주부, 학생, 무직 등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의 직업정보만 신고하도록 할 경우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약 30%에 대해서만 직업정보를 파악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직업정보의 신고대상은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 및 세대원 전수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로 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모두의 직업정보를 신고받아 파악하도록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의 신고 주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로 하고, 세대 단위 지역가입자 전수의 신고 주체는 세대주로 하여 신고 주체의 단일화를 도모한다.

1) 지역의료보험인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나누어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되어 있지 않고, 세대원 모두가 지역가입자로 됨

2) 직업정보의 파악 및 신고 사유 및 시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새로 취득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위
에서와 같이 자격변동 내역에 직업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문제는 직장가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직업분류가 달라진 경우와, 직장가입
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직업분류가 달라진 경우에는 현재의 자격변동
신고와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 국민의 장기간에 걸친 직업정보와
상병자료의 연계라는 취지에서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러한 직업정보의
변동사항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직업분류가 동일 사업장에서 달라지거나 지역가입자의
직업분류가 달라진 경우에도 새로운 직업분류를 사용자 또는 세대주가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의 신고를 통해 사용자가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한다.
그 방법은 뒤에서 기술하는 의료보험증 기재변경 방식으로 한다(부록 2-3, 부
록 3-2).

3) 직업정보의 파악 및 신고 매체

직업정보를 신고할 때 현재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 서식을 활용할 지 아니면 별도의 방식으로 할 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적 편의성 및 지금까지와의 일관성있는 전산관리를 고려할 때 기
존의 자격변동 신고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자격을 새로 취득하거나 상실하였을 때
현행 의료보험법에 의한 부록 2-1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부록 2-2의 피보
험자자격상실신고서, 부록 2-3의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 및 의료보험증발
급신청서나 현행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부록 3-1의 의료보험증발급신청서에

직업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한다.

그리고 동일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직업분류가 달라지거나 피부양자의 직업분류가 달라진 경우에는 현행 의료보험법에 의한 부록 2-3의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 및 의료보험증발급신청서에 의료보험증 기재변경으로 하여 새로운 직업정보를 신고하거나, 현행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부록 3-2의 의료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및 부록 3-3의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근무처변동등통보에 의해 새로운 직업정보를 신고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직업분류가 달라진 경우에도 현행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부록 3-2의 의료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의해 새로운 직업정보를 신고한다.

4) 과거 직업정보 포함 여부

이와 같이 했을 때 오랜 기간이 지나면 전 국민의 경시적 직업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으나, 최초 신고 이전의 직업정보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최초 신고 때 전 국민의 과거 직업정보를 포함시킬 지 결정해야 한다. 전 국민의 과거 직업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과거 직업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억도 불가능하고, 이것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 방대한 자료를 새롭게 입력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거의 직업정보는 포기하고, 현재 및 앞으로의 직업정보만이라도 충실히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5) 직업정보의 최초 파악 및 신고 시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전 국민 직업정보의 최초 신고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이다. 즉 앞으로 자격변동이 생겨 새롭게 신고할 때 직업정보를 최초로 신고하도록 할 지, 아니면 자격변동과 관계없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의

의료보험(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모두의 직업정보를 새로 신고하도록 할 지이다. 전 국민의 과거 직업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였고, 현재 의료보험 적용대상자의 자격변동이나 직업분류의 변화가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는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현재 의료보험 적용대상자의 직업정보를 모두 신고받아 입력,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직업정보의 관리

1) 직업정보의 분류 및 기록 주체

각 국민의 직업정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누가 분류하느냐 하는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의 내용별료(직장, 공교, 지역) 사업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또는 각 지사 등 어디에서 분류하는 것이 편이성과 효율성에서 적절한 지 결정해야 한다.

위에서 모든 현재 적용대상자의 직업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에, 그리고 향후 직업정보 또는 자격변동시에 직업정보를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용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주가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적용대상자의 직업정보 신고시 각종 신고 서식에 직업명만 기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경우, 각 사업장의 직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업분류를 하게 되므로 분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161개 지사나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분류하기에는 분류작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거나 파악할 수 있는 각 사업장의 건강보험(의료보험) 담당자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정보

와 피부양자의 직업정보를 근로자의 설명을 듣고 분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므로 지역가입자가 자격이나 직업정보가 변동되었을 때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내역을 신고하고, 직업분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직업정보의 기록 매체

이상과 같이 신고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로 자격과 함께 전산관리하게 되는 전 국민의 직업분류와 상병자료(건강보험 급여내역)를 연관지어 분석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보험연합회)에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을 청구할 때 요양급여비용명세서(진료비명세서)에 수진자의 직업분류를 포함함으로써, 전국적인 급여내역 통계를 작성할 때 바로 직업분류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현재와 같은(직업정보가 포함되지 않음)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진자의 직업분류를 급여내역과 합쳐서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1999년도 의료보험연합회 심사기준으로 할 때, 약국 포함 총 진료건수가 343,640,000건(직장의료보험 130,975,000건, 공교 및 지역 의료보험 212,665,000건)이고 수진율이 1인당 7.6건(직장의료보험 7.7건, 공교 및 지역 의료보험 7.5건)이어서 1년간 약 45,174,000명이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막대한 인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관리하는 직업정보를 급여내역과 연결한다는 것은 통계작성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업정보를 급여내역과 연결할 수 있는 첫째 방법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진자의 직업정보를 요양기관에서 처음부터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부록 2-4 및 부록 3-4)에 각 적용대상자의 직업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 직업분류의 정확도 향상

이상과 같이 직업정보를 파악하고 상병자료와 연계시키는데 있어서는 전 국민의 직업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관건으로 직업분류의 정확도가 바로 가장 큰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업장 의료보험 담당자에 의한 소속 근로자의 직업분류는 상당히 정확하였으나,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업정보의 불충분한 신고로 인하여 직업분류가 틀릴 가능성도 많다. 또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직업분류가 달라질 경우 이 달라진 사항이 때맞춰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직업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의료보험 담당자에게 직업분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자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홍보 및 직업분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표본조사를 통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실제 직업과 전산관리되는 직업정보의 일치도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직업정보와 상병자료의 연계

직업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수진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직업정보와 급여내역을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보험연합회)에 수진자의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명세서에 수진자의 직업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부록 4-1, 부록 4-2). 이렇게 할 경우 진료건마다 해당 수진자의 직업정보가 파악되어 상병자료와 직업정보가 바로 연계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산입력하는 항목에 수진자의 직업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진료 당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진료가 이루어진 수진자 모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진료 시점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별도의 직업정보 기록매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진자별 진료기록부에 직업정보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완전 전산화가 이루어진 대형 요양기관인 경우 이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수진자의 직업정보를 굳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수진자의 직업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겠으나, 현실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상당 기간 진료기록부에 수진자의 직업정보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4. 통계작성 담당기관

이상과 같이 할 경우 전 국민의 직업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상병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만들어졌으나 이를 실제 어느 곳에서 수행할 지도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매년 진료비심사결과를 분석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분석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산업보건정책의 수립과 평가라는 궁극적 목적 하에서 직업정보와 상병자료의 연계 분석을 생각한다면, 극히 일부분인 업무상 질병만을 위해 이 귀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고 기본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자료는 활용 목적에 따라 분석기법이 달라져야 하므로 직업정보와 상병자료의 연계 분석도 현재의 업무상 질병 중심이 아니라 모든 상병을 직업과 관련하여 그 발생률 및 유병률 등을 분석하여 직업과 관련된 상병의 근본적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고성 재해 및 직업관련성 질환의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통계를 작성하여야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5. 기타 필요한 조치

이상과 같이 직업정보와 상병자료의 연계 분석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현행 의료보험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향후 건강보험상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예상되는 주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였다. 이 밖에도 주요 과정은 아니더라도 수진자의 직업정보를 가능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들

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중 법정 요양급여 또는 임의급여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검토하였는데, 새로 제정될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가. 임의계속피보험자

현행 의료보험법 제8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는 직장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1년간은 원래 소속되어 있던 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록 2-6의 임의계속피보험자적용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서에도 피보험자의 직업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 요양비 및 분만비

현행 의료보험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5조 및 의료보험법 제37조와 시행규칙 제36조에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경우, 부록 2-7의 요양비지급신청서 및 부록 2-8의 분만비지급신청서를 보험자(의료보험조합)에게 제출하여 요양비 및 분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 국민의료보험법 제33조와 시행규칙 제17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18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들 신청서에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의 직업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자격상실 후 계속요양급여 및 분만급여

현행 의료보험법 제38조와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피보험자가 된 경우, 자격 상실 당시 요양급여 대상 상병에 대해서는 연간 요양급여 적용 기간 동안 직장의료보험 보험자로부터 계속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의료보험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는 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피보험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분만할 경우, 직장의료보험 보험자로부터 분만급여 또는 분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부록 2-9의 자격상실후계속요양급여신청서와 부록 2-10의 자격상실후분만급여신청서에 피보험자의 직업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라. 부가급여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장제비, 분만수당, 본인부담금보상금을 각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에 정한 경우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 급여를 임의급여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병자료와는 관련성이 적으나,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직업정보와 연계시킬 수 있는 등 바람직한 점이 많으므로 부록 2-11의 장제비지급신청서, 부록 2-12의 분만수당지급신청서, 부록 2-13의 본인부담금보상금지급신청서 등에도 직업정보를 기록하는 난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

반면 현행 국민의료보험법에는 장제비와 본인부담금보상금이 부가급여가 아닌 법정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직업정보를 기록하는 난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

마. 제3자에 의한 행위

현행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의 요양급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부록 2-14의 제3자행위로인한급여신고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직업정보와 상병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이 신고서에도 직업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행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으므로, 역시 직업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여 백

부록 1.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2000-2호 (2000. 1. 7)

여 백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01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
 - 011 **의회의원**
 - 0110 의회의원
 - 01101 중앙 의회의원
 - 01102 지방 의회의원
 - 012 **정부 고위공무원, 의회의원 제외**
 - 0121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 01210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 0122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 01220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 013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 0131 정당 고위임원
 - 01310 정당 고위임원
 - 0132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 01320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 0133 기타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 01330 기타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 02 **행정 및 경영 관리자**
 - 021 **기업 고위임원**
 - 0210 기업 고위임원
 - 02100 기업 고위임원
 - 022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 0220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 02200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 023 **생산 및 운영 부서 관리자**
 - 0231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 02310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 0232 광공업 생산부서 관리자
 - 02321 광업 생산부서 관리자
 - 02322 제조업 생산부서 관리자
 - 0232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생산부서 관리자
 - 0233 건설업 생산부서 관리자
 - 02330 건설업 생산부서 관리자
 - 0234 도소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 02341 도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42	소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43	자동차 판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영 부서 관리자
02351	숙박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52	음식점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6	운수 및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61	운수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62	창고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63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	사업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1	금융 및 보험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2	부동산 및 임대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4	연구개발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5	시장 및 여론조사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6	광고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9	기타 사업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8	위생, 수리 및 개인관련 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81	환경관련 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89	기타 위생, 수리 및 개인관련 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9	기타 운영부서 관리자
02391	교육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9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9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99	그 외 기타 운영부서 관리자
024	기타 부서 관리자
0241	재무 및 경영부서 관리자
02411	재무부서 관리자
02412	경영부서 관리자
0242	인사 및 노사관계 부서 관리자
02420	인사 및 노사관계 부서 관리자
0243	판매부서 관리자
02430	판매부서 관리자
0244	광고 및 홍보부서 관리자
02440	광고 및 홍보부서 관리자
0245	구매부서 관리자
02450	구매부서 관리자
0246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02460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0247	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02470	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0249	그 외 기타 부서 관리자

02490 그 외 기타 부서 관리자

03 일반관리자

030 일반관리자

- 0301 농림어업 일반관리자
- 03010 농림어업 일반관리자
- 0302 광공업 일반관리자
 - 03021 광업 일반관리자
 - 03022 제조업 일반관리자
 - 0302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일반관리자
- 0303 건설업 일반관리자
 - 03030 건설업 일반관리자
- 0304 도소매업 일반관리자
 - 03041 도매업 일반관리자
 - 03042 소매업 일반관리자
 - 03043 자동차 판매업 일반관리자
- 0305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관리자
 - 03051 숙박업 일반관리자
 - 03052 음식점업 일반관리자
- 0306 운수 및 통신업 일반관리자
 - 03061 운수업 일반관리자
 - 03062 창고업 일반관리자
 - 03063 통신업 일반관리자
- 0307 사업서비스업 일반관리자
 - 03071 금융 및 보험업 일반관리자
 - 03072 부동산 및 임대업 일반관리자
 - 0307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일반관리자
 - 03074 연구개발업 일반관리자
 - 03075 시장 및 여론조사업 일반관리자
 - 03076 광고서비스업 일반관리자
 - 03079 기타 사업서비스업 일반관리자
- 0308 위생, 수리 및 개인관련 서비스업 일반관리자
 - 03081 환경관련 서비스업 일반관리자
 - 03082 회원단체 일반관리자
 - 03089 기타 위생, 수리 및 개인관련 서비스업 일반관리자
- 0309 기타 일반관리자
 - 03091 정부행정 일반관리자
 - 03092 교육서비스업 일반관리자
 - 0309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일반관리자
 - 0309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일반관리자
 - 03099 그 외 기타 일반관리자

1 전문가

- 11 과학 전문가
 - 111 자연과학 전문가
 - 1111 수학자 및 통계학자
 - 11111 수학자
 - 11112 통계학자
 - 1112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
 - 11121 물리학자
 - 11122 천문학자
 - 1113 기상학자
 - 11130 기상학자
 - 1114 화학자
 - 11140 화학자
 - 1115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
 - 11151 지질학자
 - 11152 지구 물리학자
 - 112 생명과학 전문가
 - 1121 생물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211 식물학자
 - 11212 동물학자
 - 11213 세균학자
 - 11214 유전학자
 - 11215 생태학자
 - 11216 환경과학자
 - 11219 기타 생물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22 의학자, 약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221 해부학자
 - 11222 생화학자
 - 11223 생리학자
 - 11224 생물리학자
 - 11225 병리학자, 동물병리학자 제외
 - 11226 동물병리학자
 - 11227 약학자
 - 11229 기타 의학자, 약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23 농경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231 농경학자
 - 11232 원예학자
 - 11233 산림학자
 - 11234 축산학자
 - 11239 기타 농경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3 사회과학 전문가
- 1131 경제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310 경제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32 사회학자, 정치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321 사회학자
- 11322 인류학자
- 11323 지리학자
- 11324 정치학자
- 11329 기타 사회학자, 정치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33 철학자, 언어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331 철학자
- 11332 역사학자
- 11333 언어학자
- 11339 기타 철학자, 언어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34 심리학자 및 관련 전문가
- 11340 심리학자 및 관련 전문가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
- 120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 12011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 12012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12019 기타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 1202 네트워크관련 전문가
- 12021 컴퓨터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 12022 인터넷 전문가
- 12029 기타 네트워크관련 전문가
- 1203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 12031 시스템 프로그래머
- 12032 응용 프로그래머
- 1204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 12040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 1209 기타 컴퓨터관련 전문가
- 12090 기타 컴퓨터관련 전문가

13 공학 전문가

- 131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 1311 건축전문가
- 13111 건물건축가
- 13112 조경건축가
- 13119 기타 건축전문가

- 1312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 13121 도시설계가
 - 13122 교통설계가
 - 13129 기타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 13131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 13132 도로 및 공항건설 토목 기술자
 - 13133 항만건설 토목기술자
 - 13134 철도건설 토목기술자
 - 13135 댐건설 토목기술자
 - 13139 기타 토목기술자
- 132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전문가
 - 1321 전기공학 전문가
 - 13211 발전설비 전기기술자
 - 13212 송·배전설비 전기기술자
 - 13213 전기안전 기술자
 - 13219 기타 전기기술자
 - 1322 전자 및 통신공학 전문가
 - 13221 통신 기술자
 - 13222 반도체 기술자
 - 13223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기술자
 - 13224 전자장비 기술자
 - 13229 기타 전자 및 통신기술자
 - 1323 기계공학 전문가
 - 13231 산업용기계 기술자
 - 13232 모터 및 기관기술자, 선박기관 제외
 - 13233 선박기관 기술자
 - 13234 조선기술자
 - 13235 항공우주 기술자
 - 13236 자동차 기술자
 - 13237 냉·난방기 기술자
 - 13238 사무용기계 기술자
 - 13239 기타 기계기술자
- 133 화학 및 금속공학 전문가
 - 1331 화학공학 전문가
 - 13311 석유화학 기술자
 - 13312 음식료품 기술자
 - 13313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 13314 농약 및 비료 기술자
 - 13315 도료 및 비누제품 기술자
 - 13316 섬유 기술자
 - 13317 의약품 및 화장품 기술자
 - 13319 기타 화학 기술자
 - 1332 에너지 및 금속공학 전문가

- 13321 에너지 기술자
- 13322 금속 기술자
- 13329 기타 에너지 및 금속 기술자

134 측량 전문가

- 1340 측량 전문가
- 13401 지도제작 기술자
- 13402 토지 측량사
- 13403 사진 측량 및 분석가
- 13409 기타 측량 전문가

135 기타 공학 전문가

- 1350 기타 공학 전문가
- 13501 산업안전 기술자
- 13502 교통안전 기술자
- 13503 생산관리 기술자
- 13504 재료 기술자
- 13505 적산 기술자
- 13506 환경 기술자
- 13509 그 외 기타 기술자

14 보건 의료 전문가

141 의료진료 전문가, 간호 제외

- 1411 전문의사
- 14111 내과 전문의사
- 14112 외과 전문의사
- 14113 소아과 전문의사
- 14114 산부인과 전문의사
- 14115 정신과 전문의사
- 14116 안과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사
- 14117 피부비뇨기과 전문의사
- 14118 방사선 및 마취병리과 전문의사
- 14119 기타 전문의사

- 1412 일반의사
- 14120 일반의사
- 1413 치과 의사
- 14130 치과 의사
- 1414 한의사
- 14140 한의사
- 1415 수의사
- 14150 수의사

142 약사

- 1420 약사

- 14201 양약사
- 14202 한약사
- 143 간호 및 조산 전문가**
 - 1431 간호 전문가
 - 14311 일반 간호사
 - 14312 전문 간호사
 - 14319 기타 간호사
 - 1432 조산 전문가
 - 14320 조산사
- 144 치료 전문가**
 - 1440 치료 전문가
 - 14401 물리 치료사
 - 14402 언어 치료사
 - 14403 작업 치료사
 - 14409 기타 치료사
- 145 영양 전문가**
 - 1450 영양 전문가
 - 14501 임상 영양사
 - 14502 급식관리 영양사
 - 14503 보건 및 상담 영양사
 - 14509 기타 영양사

15 교육 전문가

- 151 대학교수**
 - 1510 대학교수
 - 15101 인문사회계열 교수
 - 15102 이학계열 교수
 - 15103 공학계열 교수
 - 15104 의약계열 교수
 - 15105 예체능계열 교수
 - 15106 사범계열 교수
 - 15109 기타 대학교수
- 152 중등학교 교사**
 - 1520 중등학교 교사
 - 15201 도덕 및 윤리 교사
 - 15202 국어 교사
 - 15203 수학 교사
 - 15204 사회 교사
 - 15205 과학 교사
 - 15206 예체능 교사
 - 15207 실업 및 전산 교사

15208	외국어 교사
15209	기타 중등학교 교사
153	초등학교 교사
1530	초등학교 교사
15300	초등학교 교사
154	유치원 교사
1540	유치원 교사
15400	유치원 교사
155	특수학교 교사
1550	특수학교 교사
15501	시각장애학교 교사
15502	청각장애학교 교사
15503	지체부자유학교 교사
15504	정신장애학교 교사
15509	기타 특수학교 교사
156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관 전문가
1561	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5611	직업훈련기관 강사
15612	직업관련 연수기관 강사
15619	기타 직업교육 관련 강사
1569	기타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관 전문가
15691	문리학원 강사
15692	어학원 강사
15693	컴퓨터학원 강사
15694	예능학원 강사
157	기타 교육 전문가
1571	교육연구 전문가
15710	교육연구 전문가
1572	장학사 및 관련 전문가
15720	장학사 및 관련 전문가
1579	그 외 기타 교육 전문가
15790	그 외 기타 교육 전문가
16	행정, 경영 및 재정전문가
161	행정 전문가
1611	정부정책 기획 및 집행 행정 전문가
16110	정부정책 기획 및 집행 행정 전문가
1612	기업경영 행정 전문가
16120	기업경영 행정 전문가
1613	일반행정 전문가

- 16130 일반행정 전문가
- 162 회계관련 전문가
 - 1621 회계 전문가
 - 16211 회계사
 - 16212 세무사
 - 16219 기타 회계 전문가
 - 1622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 16220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 163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 1630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 16301 노사관계 전문가
 - 16302 직업연구 전문가
 - 16309 기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 164 금융·보험 전문가
 - 1641 금융 전문가
 - 16411 증권 전문가
 - 16412 금융상품개발 전문가
 - 16419 기타 금융 전문가
 - 1642 보험 전문가
 - 16420 보험 전문가
- 165 사업서비스관련 전문가
 - 1651 사업서비스 전문가
 - 16511 홍보 전문가
 - 16512 조사 분석가
 - 16513 판촉기법 전문가
 - 16514 광고 대리인
 - 16515 경영지도·진단 전문가
 - 16516 경영조사 분석가
 - 16517 관세사
 - 1659 기타 사업서비스 전문가
 - 16590 기타 사업서비스 전문가
-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 171 법률 전문가
 - 1711 검사 및 변호사
 - 17111 검사
 - 17112 변호사
 - 1712 판사
 - 17120 판사
 - 1713 기타 법률 전문가
 - 17131 특허 전문가

- 17132 법무사
- 17133 공증인
- 17139 그 외 기타 법률 전문가
- 172 사회서비스 전문가
 - 1721 사회복지 전문가
 - 17210 사회복지 전문가
 - 1729 기타 사회서비스관련 전문가
 - 17290 기타 사회서비스관련 전문가
- 173 종교 전문가
 - 1731 성직자
 - 17310 성직자
 - 1739 기타 종교 전문가
 - 17390 기타 종교 전문가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 181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 1811 기록 보관원 및 박물관 등 관리인
 - 18111 기록보관원
 - 18112 박물관 등 관리인
 - 1812 사서
 - 18120 사서
- 182 작가 및 관련 전문가
 - 1821 작가
 - 18211 소설가
 - 18212 시인
 - 18219 기타 작가
 - 1822 번역가 및 통역가
 - 18221 번역가
 - 18222 통역가
 - 1829 기타 작가관련 전문가
 - 18291 기자
 - 18292 평론가
 - 18293 편집자
 - 18294 광고문 작성가
 - 18299 그 외 기타 작가관련 전문가
-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
 - 1831 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 18311 조각가
 - 18312 화가
 - 18313 상업 미술가
 - 18314 사진작가

- 18315 만화가
- 18316 만화영화작가
- 18319 기타 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 1832 디자이너
 - 18321 제품 디자이너
 - 18322 패션 디자이너
 - 18323 인테리어 디자이너
 - 18324 시각 디자이너
 - 18329 기타 디자이너
- 1833 음악가 및 관련 전문가
 - 18331 작곡가
 - 18332 관현악단 지휘자
 - 18333 합창단 지휘자
 - 18334 성악가, 대중가요 가수 제외
 - 18335 기악 연주자, 국악 제외
 - 18336 대중가요 가수
 - 18337 국악인
 - 18339 기타 음악가 및 관련 전문가
- 1834 무용가 및 관련 전문가
 - 18341 안무가
 - 18342 무용가
 - 18349 기타 무용가 및 관련 전문가
-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 1841 연기자 및 감독
 - 18411 영화배우 및 텔런트
 - 18412 연극배우
 - 18413 코미디언 및 개그맨
 - 18414 성우
 - 18415 영화감독
 - 18416 무대감독
 - 1842 프로그램 진행자
 - 18421 아나운서
 - 18422 전문 연예사회자
 - 18423 디스크 자키
 - 18429 기타 프로그램 진행자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2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11 자연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110 자연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1101 통계 및 수학 준전문가

21102 물리학 기술공

21103 천문학 기술공

21104 기상학 기술공

21105 화학 기술공

21106 지질학 기술공

21109 기타 자연과학 기술공

212 생명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121 생명과학 기술종사자

21211 생물학 기술공

21212 의료과학 기술공

21219 기타 생명과학 기술공

2122 농경 및 임업 기술종사자

21221 농경 및 원예 기술공

21222 임업 기술공

21229 기타 농경 및 임업 기술공

2123 농업 및 영림 자문가

21231 농업 자문가

21232 영림 자문가

213 사회과학관련 종사자

2130 사회과학관련 종사자

21300 사회과학관련 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201 컴퓨터관련 운영원

22010 컴퓨터관련 운영원

2202 컴퓨터 조작용

22020 컴퓨터 조작용

2203 산업용 로봇 조작용

22030 산업용 로봇 조작용

23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31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종사자

- 2310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종사자
 - 23101 건설토목 기술공
 - 23102 토목전적 기술공
 - 23103 측량 기술공
 - 23109 기타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공
- 232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종사자
 - 2321 전기공학 기술종사자
 - 23211 전력 송·배전 기술공
 - 23212 전기안전 기술공
 -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 2322 전자 및 통신 기술종사자
 - 23221 통신 기술공
 - 23222 컴퓨터 설계 기술공
 - 23223 전자장비 기술공
 - 23229 기타 전자 및 통신 기술공
 - 2323 기계공학 기술종사자
 - 23231 산업용 기계 기술공
 - 23232 모터 및 기관 기술공
 - 23233 조선 기술공
 - 23234 항공우주 기술공
 - 23235 자동차 기술공
 - 23236 냉·난방기 기술공
 - 23237 사무용기계 기술공
 - 23239 기타 기계공학 기술공
- 233 화학 및 금속공학 기술종사자
 - 2331 화학공학 기술종사자
 - 23311 석유화학 기술공
 - 23312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 기술공
 - 23313 농약 및 비료 기술공
 - 23314 도료 및 비누제품 기술공
 - 23315 의약품 및 화장품 기술공
 - 23319 기타 화학공학 기술공
 - 2332 에너지 및 금속공학 기술종사자
 - 23321 에너지 기술공
 - 23322 금속제련 기술공
 - 23323 금속주조 기술공
 - 23329 기타 에너지 및 금속공학 기술공
- 234 제도 기술종사자, 캐드 포함
 - 2340 제도 기술종사자, 캐드 포함
 - 23401 기계 제도사
 - 23402 전기 및 전자장비 제도사
 - 23403 토목공학 제도사

23404	건축 제도사
23405	지도 제도사
23406	기술 도해사
23409	기타 제도사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2351	광학 및 녹화장비 기술종사자
23511	사진가
23512	사진기자
23513	촬영기사
23514	녹음기사
23519	기타 광학 및 녹화장비 기사
2352	방송 및 통신장비 기술종사자
23521	무선통신사
23522	전신장비 기사
23523	방송장비 기사
23524	송신장비 기사
23525	영사기사
23529	기타 방송 및 통신장비 기사
2353	의료장비 기술종사자
23531	임상병리사
23532	방사선사
23539	기타 의료장비 기사
236	선박·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종사자
2361	선박 기관사 및 기술종사자
23611	선박 기관사
23612	선장
23613	항해사
23614	도선사
23619	기타 선박 기술공
2362	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종사자
23621	항공기 조종사
23622	항법사
23623	항공 기관사
23629	기타 항공관련 기술공
2363	교통 관제사 및 안전기술종사자
23631	항공교통 관제사
23632	선박교통 관제사
23633	항공교통 안전기술공
237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
2371	건물안전 검사 및 화재감식 종사자
23711	건물 검사원
23712	화재예방 및 감식원

- 23719 기타 건물안전 검사 및 화재 감식원
- 2372 산업안전, 보건 및 품질검사 종사자
- 2372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원
- 23722 환경 관리원
- 23723 품질 검사원
- 23724 환경영향 평가원
- 23725 교통영향 평가원
- 238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 2380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 23801 생산공학 기술공
- 23802 산업능력 기술공
- 23803 재료 기술공
- 23809 그 외 기타 공학관련 기술공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241 의료진료 준전문가

- 2410 의료진료 준전문가
- 24101 보건진료원
- 24102 간호조무사
- 24103 구급요원
- 24109 기타 의료진료 준전문가

242 의료기술 종사자

- 2421 치과기술 종사자
- 24211 치과위생사
- 24212 치과기공사
- 24219 기타 치과기술 종사자
- 2422 안경사
- 24220 안경사
- 2423 위생사
- 24230 위생사

243 안마사 및 전통의료 치료사

- 2431 안마사
- 24310 안마사
- 2432 전통의료 치료사
- 24320 전통의료 치료사

25 교육 준전문가

251 대학교육 조교 및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 2511 대학교육 조교
- 25110 대학교육 조교

- 2512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 25121 초등학교 보조교사
- 25122 중등학교 보조교사
-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
- 2521 교육기관 교육 준전문가
- 25211 가정학원 강사
- 25212 기술학원 강사
- 25213 사무학원 강사
- 25219 기타 교육기관 교육 준전문가
- 2522 교육기관 이외 교육 준전문가
- 25221 문리 강사
- 25222 예능 강사
- 25229 기타 강사
-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
- 2530 기타 교육 준전문가
- 25301 자동차 운전교관
- 25309 그 외 기타 교육 준전문가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 261 금융·보험 준전문가
- 2611 금융 준전문가
- 26111 외환 중개인
- 26112 증권 중개인
- 26113 선물거래 중개인
- 26119 기타 금융 준전문가
- 2612 보험 준전문가
- 26121 손해사정인
- 26122 보험대리인
- 26129 기타 보험 준전문가
- 262 판매 준전문가
- 2621 부동산 대리인
- 26211 부동산 중개인
- 26212 부동산신탁 및 컨설팅원
- 26219 기타 부동산 대리인
- 2622 여행상품 개발 및 상담종사자
- 26220 여행상품 개발 및 상담종사자
- 2623 기술 및 상업판매 종사자
- 26231 산업용 기계장비 기술판매원
- 26232 전자장비 기술판매원
- 26233 의료장비 및 용품 기술판매원
- 26234 농업용 기계장비 기술판매원

- 26235 상업판매원
- 26239 기타 기술판매원
- 2624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 종사자
- 26240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
- 2625 구매대리인
- 26251 도·소매업 구매대리인
- 26252 농산물 구매대리인
- 26259 기타 구매대리인
- 2626 감정 및 경매 종사자
- 26261 보석 감정사
- 26262 미술품 감정사
- 26263 부동산 감정사
- 26264 음식료품 감정사
- 26265 경매사
- 26269 기타 감정사
- 263 상품중개 및 사업서비스 대리종사자
- 2631 상품중개 종사자
- 26311 상품중개인
- 26312 머천다이어
- 26313 물류관리사
- 2632 통관대리 종사자
- 26320 통관대리인
- 2633 직업상담 종사자
- 26330 직업상담원
- 2634 개인 및 사업서비스 대리종사자
- 26341 경기 프로모터
- 26342 연예인 매니저
- 26343 이벤트 대리인
- 26344 광고 판매인
- 26349 기타 개인 및 사업서비스 대리인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 271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 2711 사회복지 준전문가
- 27111 아동·부녀자복지 상담원
- 27112 생활지도원
- 27113 보육사
- 2719 기타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 27190 기타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 272 종교 준전문가
- 2720 종교 준전문가
- 27200 종교 준전문가

-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 281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 2811 음악 및 무용관련 준전문가
- 28111 대중업소 악사
- 28112 대중업소 가수
- 28113 대중업소 무용수
- 28119 기타 음악 및 무용관련 준전문가
- 2812 미술관련 준전문가
- 28120 미술관련 준전문가
- 2813 연예관련 준전문가
- 28131 대중업소 연예 사회자
- 28139 기타 연예관련 준전문가
- 282 운동, 경기 및 체력관련 준전문가
- 2821 운동, 경기관련 준전문가
- 28211 직업운동선수
- 28212 직업경주선수
- 28213 바둑기사
- 28214 경기 감독 및 코치
- 28215 경기 심판
- 28219 기타 운동, 경기관련 준전문가
- 2822 체력훈련가
- 28220 체력훈련가
- 283 기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 2831 마술, 곡예 및 관련 준전문가
- 28310 마술, 곡예 및 관련 준전문가
- 2832 동물조련사
- 28320 동물조련사
- 29 기타 준전문가
- 291 관리 준전문가
- 291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 29111 관리비서
- 29112 속기사
- 29119 기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 2919 기타 관리 준전문가
- 29191 정부관리 준전문가
- 29199 그 외 기타 관리 준전문가
- 292 법률, 의료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
- 2921 법률 준전문가
- 29211 특허사무 준전문가

29212	집달관
29213	법무 준전문가
29219	기타 법률 준전문가
2922	의료사무 준전문가
29221	의무기록사
29229	기타 의료사무 준전문가
2929	기타 법률, 의료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
29291	감사 준전문가
29299	그 외 기타 법률, 의료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
293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2931	세관 공무원
29310	세관 공무원
2932	조세 공무원
29320	조세 공무원
2933	사회보장 공무원
29330	사회보장 공무원
2934	허가 공무원
29340	허가 공무원
2935	병무 공무원
29350	병무 공무원
2939	기타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29390	기타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 31 일반사무관련 종사자
 - 311 일반사무 종사자
 - 3110 총무 및 인사사무 종사자
 - 31101 총무 사무원
 - 31102 인사노무 사무원
 - 312 기획 및 홍보사무 종사자
 - 3121 기획사무 종사자
 - 31210 기획 사무원
 - 3122 홍보사무 종사자
 - 31220 홍보 사무원
 - 313 정부 행정사무 종사자
 - 3130 정부행정 사무 종사자
 - 31300 정부행정 사무원
 - 314 판매관련 사무 종사자
 - 3141 판매사무 종사자
 - 31411 국내판매 사무원
 - 31412 해외판매 사무원
 - 3149 기타 판매관련 사무 종사자
 - 31491 분양 및 임대 사무원
 - 31499 그 외 기타 판매관련 사무원
 - 315 계수사무 종사자
 - 3151 회계사무 종사자
 - 31510 회계사무원
 - 3152 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
 - 31521 금융사무원
 - 31522 보험사무원
 - 3153 통계 사무 종사자
 - 31531 통계자료집계 사무원
 - 31532 통계조사 사무원
 - 31539 기타 통계사무원
 - 316 자재, 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 종사자
 - 3161 자재사무 종사자
 - 31611 자재관리 사무원
 - 31612 검수 사무원
 - 31619 기타 자재 사무원
 - 3162 생산사무 종사자
 - 31621 자재수급 사무원

- 31622 생산계획 사무원
- 31629 기타 생산 사무원
- 3163 운송사무 종사자
 - 31631 항공운송 사무원
 - 31632 철도운송 사무원
 - 31633 도로운송 사무원
 - 31634 수상운송 사무원
 - 31639 기타 운송 사무원
- 317 사무지원 종사자
 - 3171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
 -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 31712 워드프로세서 조직원
 - 31713 사무용 기기 조직원
 - 3172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 3173 비서
 - 31730 비서
- 318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 종사자
 - 3181 도서 및 서류정리사무 종사자
 - 31810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 3182 우편관련 사무 종사자
 - 31821 우편물 분류 사무원
 - 31829 기타 우편관련 사무원
 - 3183 심사, 교정 및 관련사무 종사자
 - 31830 심사, 교정 및 관련 사무원
 - 3184 대서사무 종사자
 - 31840 대서 사무원
- 32 고객서비스사무 종사자
 - 321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사무 종사자
 - 3211 대금수납 및 매표사무 종사자
 - 32111 대금수납 사무원
 - 32112 매표사무원, 여행용 표 제외
 - 32119 기타 대금수납 및 매표 사무원
 - 3212 금전출납사무 종사자
 - 32121 은행출납 사무원
 - 32122 외환취급 사무원
 - 32123 우체국출납 사무원
 - 32129 기타 금전출납 사무원
 - 3213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
 - 32130 수금 및 관련사무원

3214	복권판매 및 마권발매 종사자
32140	복권판매 및 마권발매자
322	안내 및 접수 사무 종사자
3221	안내사무 종사자
32211	시설안내 사무원
32212	방송안내 사무원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32221	전화교환원
32222	전화번호 안내원
3223	여행관련 사무 종사자
32231	여행표 발행 사무원
32232	여행 사무원
32239	기타 여행관련 사무원
3224	접수 사무 종사자
32241	호텔 접수원
32242	병원 접수원
32243	음식점 접수원
32249	기타 접수 사무원
323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
3230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32301	고객상담 사무원
32309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 41 대인서비스관련 종사자
 -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 4111 보육 종사자
 - 41111 가정 보육사
 - 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 보조보육사
 - 4112 시설 개인보호 종사자
 - 41121 간병인
 - 41122 산후 조리 종사원
 - 41123 치료사 보조원
 - 41129 기타 시설 개인보호 종사원
 - 4113 가정 개인간호 종사자
 - 41130 가정 개인간호 종사원
 - 4119 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 41191 약사 보조원
 - 41192 수의사 보조원
 - 41199 그 외 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원
 - 412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 종사자
 - 4121 이용사
 - 41210 이용사
 - 4122 미용관련 종사자
 - 41221 미용사
 - 41222 피부관리사
 - 41223 욕실 종사원
 - 41224 애완동물 미용사 및 동물관리자
 - 4129 기타 미용관련 종사자
 - 41291 화장 및 분장사
 - 41292 코디네이터
 - 41299 그 외 기타 미용관련 종사원
 - 413 시중서비스 종사자
 - 4130 시중서비스 종사자
 - 41301 말벗 및 개인 시중원
 - 41302 숙박시설 시중원
 - 41309 기타 시중원
 - 414 장의 및 관련서비스 종사자
 - 4140 장의 및 관련서비스 종사자
 - 41401 장의사
 - 41409 기타 장의 및 관련서비스 종사원
 - 415 오락 및 여가서비스 종사자

- 4151 오락 서비스 종사자
 - 41511 오락장 종사원
 - 41512 클럽 종사원
 - 41519 기타 오락 서비스 종사원
- 4152 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
 - 41521 응원단원
 - 41522 레크레이션 지도자
 - 41529 기타 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원
- 4153 모니터 서비스 종사자
 - 41530 모니터요원
- 4154 도박 진행자 및 대금업자
 - 41541 도박 진행자
 - 41542 전당업자 및 대금업자
- 416 기타 대인서비스관련 종사자
 - 4161 결혼관련 서비스 종사자
 - 41611 결혼상담원
 - 41612 예식 종사원
 - 41619 기타 결혼관련 서비스 종사원
 - 4162 점술가 및 관련 종사자
 - 41621 점술가
 - 41622 점술관련 종사원

42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 421 음식조리 종사자
 - 4211 주방장
 - 42110 주방장
 - 4212 음식점 조리사, 간이음식점 제외
 - 42121 한식 조리사
 - 42122 양식 조리사
 - 42123 중식 조리사
 - 42124 일식 조리사
 - 42129 기타 음식점 조리사
 - 4213 간이음식점 조리사
 - 42130 간이음식점 조리사
 - 4214 음식점 이외 조리사
 - 42141 병원 조리사
 - 42142 선박 조리사
 - 42143 열차식당 조리사
 - 42149 기타 음식점 이외 조리사
 - 4215 차류 조리사
 - 42150 차류 조리사
 - 4219 기타 조리사

42190 기타 조리사
422 음식서비스관련 종사자
 4221 음식 서비스 종사자
 42211 음식업 서비스 종사원
 42212 주류 서비스 종사원
 42213 음료 서비스 종사원
 42219 기타 서비스 종사원
 4222 바텐더
 42220 바텐더

43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431 운송수행 종사자
 4310 운송수행 종사자
 43101 선박 승무원
 43102 항공기 승무원
 43103 여객열차 승무원
 43109 기타 운송수행원
432 여행안내 종사자
 4321 국내외 여행안내 종사자
 43211 국내여행 안내원
 43212 국외여행 안내원
 4322 관광통역 안내 종사자
 43220 관광통역 안내원
 4329 기타 여행안내 종사자
 43290 기타 여행안내원

44 보안서비스 종사자

441 경찰 종사자
 4410 경찰 종사자
 44101 일반경찰관
 44102 해양경찰관
442 소방 및 응급구조 종사자
 4420 소방 및 응급구조 종사자
 44201 소방관
 44202 응급구조대
 44209 기타 소방업무 종사원
443 교도 및 보도 종사자
 4430 교도 및 보도 종사자
 44301 교도관
 44302 보도관

444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자
4440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자
44401	청원경찰
44402	안전 순찰원
44403	인명 구조원
44404	경호원
44409	그 외 기타 보안 서비스 종사원

5 판매 종사자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511 도매 판매 종사자

- 5110 도매 판매 종사자
 - 51101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판매원
 - 51102 가정용품 도매판매원
 - 51103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판매원
 - 51109 기타 도매 판매원

512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 5120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 51201 종합 소매판매원
 - 5120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 51203 의복, 신발 및 관련 제품 소매판매원
 - 51204 가정용 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판매원
 - 51205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
 - 51206 주유원
 -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513 소매 방문 판매 및 이동 판매 종사자

- 5131 소매 방문 판매 종사자
 - 51310 소매 방문판매원
- 5132 노점 및 이동 판매 종사자
 - 513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52 통신 판매 종사자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 5210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 52100 전화통신 판매원

522 통신서비스 및 통신 재판매 종사자

- 5221 통신서비스 판매 종사자
 - 52210 통신서비스 판매원
- 5222 통신 재판매 종사자
 - 52220 통신 재판매원

5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530 모델 및 홍보 종사자

- 5301 모델
 - 53010 모델
- 5302 홍보 종사자
 - 53020 홍보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업 숙련 종사자
 - 611 전답작물 재배 종사자
 - 6111 곡식작물 재배 종사자
 - 61110 곡식작물 재배자
 - 6112 특용작물 재배 종사자
 - 61120 특용작물 재배자
 - 6113 채소 재배 종사자
 - 61130 채소 재배자
 - 612 과수작물 재배 종사자
 - 6121 과수작물 재배 종사자, 열대과일 제외
 - 61211 사과 재배자
 - 61212 배 재배자
 - 61213 복숭아 재배자
 - 61214 포도 재배자
 - 61215 차 재배자
 - 61219 기타 과수작물 재배자
 - 6122 열대과일 재배 종사자
 - 61221 감귤 재배자
 - 61229 기타 열대과일 재배자
 - 613 정원사, 육묘 및 버섯재배 종사자
 - 6131 정원사, 원예 및 육묘재배 종사자
 - 61311 정원사 및 원예사
 - 61312 육묘 재배자
 - 61319 기타 정원사, 원예 및 육묘 재배자
 - 6132 버섯 재배 종사자
 - 61320 버섯 재배자
 - 614 복합 및 시설작물 재배 종사자
 - 6141 복합작물 재배 종사자
 - 61410 복합작물 재배자
 - 6142 시설작물 재배 종사자
 - 61420 시설작물 재배자
 - 615 동물사육 및 관련 종사자
 - 6151 낙농품 생산 종사자
 - 61510 낙농품 생산자
 - 6152 가축사육 종사자
 - 61521 육우 사육자
 - 61522 돼지 사육자

61529 기타 가축 사육자
 6153 가금사육 종사자
 61530 가금 사육자
 6154 양봉 및 양잠 생산 종사자
 61540 양봉가 및 양잠가
 6155 복합동물 사육 종사자
 61550 복합동물 사육자
 6159 기타 동물사육 및 관련 종사자
 61591 기타 동물 및 조류 사육자
 61592 동물수정, 가금부화 및 감별사
 61599 그 외 기타 동물사육 및 관련 종사원
616 작물 및 동물 복합생산자
 6160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61600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617 자급농업 종사자
 6170 자급농업 종사자
 61700 자급농업 종사자
618 수렵업 종사자
 6180 수렵 종사자
 61800 수렵원

62 임업 숙련종사자
620 임업 숙련 종사자
 6201 조림 및 영림 관련 종사자
 62011 조림원
 62012 영림원
 62013 벌목원
 62014 목재 답사자
 62019 기타 조림 및 영림관련 종사원
 6202 임산물 및 임업식물관련 종사자
 62021 임산물 채취원
 62022 임업용 식물 증식원
 6203 목탄굽기원 및 관련 종사자
 62031 목탄굽기원
 62039 기타 목탄굽기원 및 관련 종사원

63 어업 숙련종사자
630 어업 숙련종사자
 6301 수생 동·식물 양식 종사자
 63011 물고기 양식원

63012	굴 양식원
63013	해조류 양식원
63019	기타 수생동물 양식원
6302	내륙 및 연안어업 종사자
63021	내수면 어부
63022	연안어부
63023	해녀
63029	기타 내륙 및 연안어업 종사원
6303	원양어업 종사자
63030	원양어업 종사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추출 및 건설기능 종사자
 - 711 광원, 발파원, 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 7111 광원 및 채석 종사자
 - 71111 광원
 - 71112 채석원
 - 71119 기타 광원 및 채석원
 - 7112 점화 및 발파 종사자
 - 71120 점화 및 발파원
 - 7113 석재 절단, 재단 및 조각 종사자
 - 71131 석재 선별 및 절단원
 - 71132 석재 설계원
 - 71133 석재 재단 및 완성원
 - 71134 석재 조각원
 - 71139 기타 석재절단, 재단 및 조각원
 - 712 건물 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121 전통건물 건축 종사자
 - 71210 전통건물 건축원
 - 7122 조적 및 석재 부설 종사자
 - 71221 조적원
 - 71222 석재 부설원
 - 71223 보도블럭 설치원
 - 71224 조립 콘크리트 설치원
 - 71229 기타 조적 및 석재 부설원
 - 7123 콘크리트 타설원, 완성원 및 관련 종사자
 - 71231 거푸집 설치원
 - 71232 철근원
 - 71233 시멘트 혼합 및 완성원
 - 71234 테라조원
 - 71239 기타 콘크리트 타설원, 완성원 및 관련 기능원
 - 7124 건축 목공
 - 71240 건축 목공
 - 7125 목공 및 소목공, 건축목공 제외
 - 71251 소목세공
 - 71252 장치물 목공
 - 71253 선박 목공
 - 71254 무대 목공
 - 71259 기타 목공 및 소목공
 - 7129 기타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1291 건물 구조물 설치원

71292	건물 보수원
71293	비계 설치원
71294	건물 해체원
71299	그 외 기타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원
713	건물 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31	마루설치 및 타일부착 종사자
71311	대리석 부착원
71312	타일 부착원
71313	마루 설치원
71314	카펫공
71319	기타 마루설치 및 타일 부착원
7132	미장 종사자
71321	장식 미장원
71322	외벽 미장원
71329	기타 미장원
7133	단열 종사자
71331	건물 단열원
71332	시설장치 단열원
71339	기타 단열원
7134	유리부착 종사자
71341	건물 유리원
71342	판 유리원
71343	장식 유리원
71349	기타 유리원
7135	연관 및 배관 종사자
71351	상하수 배관원
71352	가스 배관원
71353	선박 배관원
71354	항공기 배관원
71355	관 부설원
71359	기타 연관 및 배관원
7136	건축 및 관련 전기 종사자
71361	건축물 전기원
71362	건물보수 전기원
71363	내온사인 전기원
71364	무대 전기원
71369	기타 건축 및 관련 전기원
7139	기타 건물 완성 종사자
71390	기타 건물 완성원
714	건물 도장, 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41	건물 도장 및 관련 종사자
71411	건물 도장원
71412	철구조물 도장원

71413 무대장치 도장원
 71419 기타 건물도장 및 관련 기능원
 7142 도배 종사자
 71420 도배원
 7143 건물 청결 종사자
 71431 건물외벽 청결원
 71432 배관 청결원
 71433 수조 청결원
 71434 병충해 방역원
 71439 기타 건물 청결원

72 금속, 기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금속주형, 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1 금속주형 및 모형제조 종사자
 72111 금속모형 제조원
 72112 주형원
 72113 금속 주입원
 72119 기타 금속 주형 및 모형 제조원
 7212 용접 및 화염절단 종사자
 72121 가스 용접원
 72122 전기 용접원
 72123 초음파 용접원
 72124 화염 절단원
 72129 기타 용접 및 화염절단원
 7213 구조금속 준비 및 건립 종사자
 72131 구조강 가공원
 72132 구조강 건립원
 72133 선박구조물 건립원
 72139 기타 구조금속 준비 및 건립원
 7214 삭구원 및 케이블 접속 종사자
 72141 건설인양장비 삭구원
 72142 선박 삭구원
 72143 케이블카 및 스키리프트 삭구원
 72144 현수교량 케이블 접속원
 72149 기타 삭구원 및 케이블 접속원
 7215 수중 기능 종사자
 72150 수중 기능원

722 대장원, 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21 대장원 및 단조관련 종사자
 72211 신선원
 72212 단조원
 72213 금속 성형원

72214	대장원
72219	기타 대장원 및 단조관련 기능원
7222	공구제조 및 관련 종사자
72221	공구 제조원
72222	개이지 제조원
72223	자물쇠 조립원
72229	기타 공구제조 및 관련 기능원
7223	금속연삭 기능 종사자
72231	절삭공구 갈이원
72232	튽날 연삭원
72233	금속 세척원
72239	기타 금속연삭 기능원

73 기계설치 및 정비기능 종사자

731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7311	자동차 정비 종사자
73111	자동차기관 정비원
73112	자동차 경정비원
73113	이륜자동차 정비원
73114	자전거 정비원
7312	특수차량 정비 종사자
73120	특수차량 정비원
7313	항공기 정비 종사자
73130	항공기 정비원
7314	철도차량 정비 종사자
73141	철도 기관차 정비원
73142	객화차 정비원
7315	전동차량 정비 종사자
73150	전동차량 정비원
7316	선박기관 정비 종사자
73160	선박기관 정비원

732 농·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21	농업, 광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211	농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12	광산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2	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221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22	섬유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23	금속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24	인쇄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29	기타 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원

733 전기, 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 7331 전기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 73311 전기발전, 송·배전장치 설치 및 정비원
 - 73312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원
 - 73313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
 - 73314 기타 전기장치 설치 및 정비원
 - 73315 자동차 전기원
 - 73316 항공기 전기원
 - 73317 선박 전기원
 - 73318 전기기구 설치 및 정비원
 - 73319 기타 전기 설치 및 정비원
- 7332 전자장비 설치 종사자
 - 73321 방송 통신장비 설치원
 - 73322 전자음향장비 설치원, 방송장비 제외
 - 73323 신호장비 설치원
 - 73324 의료장비 설치원
 - 73325 컴퓨터 설치원
 - 73329 기타 전자장비 설치원
- 7333 전자 정비 및 수리 종사자
 - 73331 전자음향장비 수리원
 - 73332 사무기기 수리원
 - 73333 컴퓨터 수리원
 - 73339 기타 전자정비 및 수리원
- 7334 전신, 전화 설치 및 수리 종사자
 - 73341 전신, 전화 설치원
 - 73342 전신, 전화 수리원
- 7335 전기배선, 수리 및 케이블가설 종사자
 - 73351 송·배전 설비 전기원
 - 73352 지중 전력 설비 전기원
 - 73353 통신케이블 가설원
 - 73354 케이블 접속원
 - 73359 기타 전기배선, 수리 및 케이블 가설원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업기능 종사자

- 741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 7411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 종사자
 - 74111 시계 제조원
 - 74112 시계 수리원
 - 74113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원
 - 74114 광학기구 제조 및 수리원
 - 74115 카메라 수리원
 - 74116 정형기구 제조 및 수리원
 - 74119 기타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원
 - 7412 악기 제조 및 조율 종사자

74121	현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2	목관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3	금관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4	전반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5	타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6	전통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7	조율사
74129	기타 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3	장신구 및 귀금속 종사자
74131	보석 세공원
74132	귀금속 세공원
74133	보석 부착원
74139	기타 장신구 및 귀금속 기능원
742	도공, 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21	연마휠 성형원, 도자원 및 관련 종사자
74211	연마휠 성형원
74212	도자기 주형원
74213	도자기 녹로원
74214	벽돌 및 타일 성형원
74215	유약 처리원
74219	기타 연마휠 성형원, 도자원 및 관련 기능원
7422	유리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74220	유리가공 관련 기능원
7423	유리, 도기 및 관련장식 도장 종사자
74231	유리 장식원
74232	제경원
74233	도기 장식원
74234	간판 도장원
74235	도장원, 건설 도장원 제외
74239	기타 유리, 도기 및 관련장식 도장원
743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업 종사자
7431	목재 및 관련재료 수공업 종사자
74311	목 공예원
74312	동죽 공예원
74313	인장 공예원
74314	종이 공예원
74319	기타 목재 및 관련재료 수공업원
7432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업 종사자
74321	수편물원
74322	한복 제조원
74323	가죽 수공업원
74329	기타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업원
7433	기타 재료 수공업 종사자

- 74331 석 공예원
- 74332 조화 공예원
- 74333 양초 공예원
- 74334 자개 세공원
- 74339 그 외 기타재료 수공예원
- 744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441 인쇄 조판원 및 관련 종사자
- 74411 인쇄조판원 및 식각원
- 74412 사진 식자원
- 74419 기타 인쇄조판원 및 관련 기능원
- 7442 제판원 및 관련 종사자
- 74421 연판 제조원
- 74422 전기 제판원
- 74423 인쇄 제판원
- 74424 사진 제판원
- 7443 스크린인쇄 및 직물인쇄 종사자
- 74431 스크린 인쇄원
- 74432 날염원
- 74439 기타 직물 인쇄원
- 7444 사진처리 및 관련 종사자
- 74440 사진처리원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1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11 도살, 생선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 75111 도살원
- 75112 절육원
- 75113 염장원
- 75114 수산물 가공원
- 75119 기타 도살, 생선가공관련 기능원
- 7512 제빵관련 기능 종사자
- 75121 제빵, 제과원
- 75122 떡 제조원
- 75123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원
- 75129 기타 제빵, 제과원
- 7513 식품 선별 및 저장 기능 종사자
- 75131 식품 선별원, 과일 제외
- 75132 과일 선별원
- 75133 과일 및 채소 염장원
- 75139 기타 식품 선별 및 저장원
- 7519 기타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190 기타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원

- 752 목재처리, 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21 목재처리 기능 종사자
- 75211 목재 선별원
- 75219 기타 목재 처리원
- 7522 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221 장롱 제조원
- 75222 책상 및 탁상 제조원
- 75223 목재케이스 제조원
- 75224 목제통 및 상자 제조원
- 75225 목형 제조원
- 75226 조각무늬 새공원
- 75227 목제가구 칠원
- 75229 기타 가구제조 및 관련 기능원
- 7523 목재공작기 조정 종사자
- 75231 제재기 조정원
- 75232 목재선반 조정원
- 75233 목재성형기 조정원
- 75234 목각기 조정원
- 75235 목재평삭기 조정원
- 75239 기타 목재공작기 조정원
- 7524 바구니 세공, 솔 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241 바구니 세공원
- 75242 솔 제조원
- 75243 목재장난감 제조원
- 75244 조물제품 제조원
- 75245 등가구 제조원
- 75249 기타 바구니 세공, 솔 제조 및 관련 기능원
- 753 섬유, 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31 섬유 및 직조관련 기능 종사자
- 75311 섬유 선별원
- 75312 양모 세척원
- 75319 기타 섬유 및 직조관련 기능원
- 7532 의복, 모자 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321 양복 제조원
- 75322 양장 제조원
- 75323 모자 및 가발 제조원
- 75324 셔츠 및 체육복 제조원
- 75325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원
- 75329 기타 의복, 모자제조 및 관련 기능원
- 7533 모피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331 모피 선별원
- 75332 모피옷본 제조원
- 75333 모피 재단원

75334 모피의복 제조원
 75339 기타 모피제조 및 관련 기능원
 7534 직물, 가죽관련 옷본 제조 및 재단 종사자
 75341 옷본 제조원
 75342 모자본 제조원
 75343 의복 재단원, 가죽제외
 75344 가죽의복 재단원
 75349 기타 직물, 가죽관련 옷본 제조 및 재단원
 7535 재봉관련 기능 종사자
 75351 직물 재봉원
 75352 가죽 재봉원
 75353 모피 재봉원
 75354 신발 재봉원
 75355 천막 재봉원
 75356 인형 제조원
 75359 기타 재봉관련 기능원
 7536 가구장식물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75361 가구장식물 제조원
 75362 차량시트 제조원
 75363 매트리스 제조원
 75369 기타 가구장식물 제조관련 기능원
 7537 의복수선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371 의복 수선원, 모피 및 가죽 제외
 75372 모피의복 수선원
 75373 가죽의복 수선원
 75374 신변잡화 수선원
 75375 가구장식물 수선원
 75379 기타 의복수선 및 관련 기능원
 754 펠트, 가죽신발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7541 펠트 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75411 펠트, 원피 선별원
 75412 펠트 처리원
 75419 기타 펠트가공관련 기능원
 7542 가죽신발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75421 제화원
 75422 구두 재단원
 75423 구두 완성원
 75424 구두 수선원
 75425 구두 원형 제조원
 75426 마구류 제조원
 75429 기타 가죽신발 제조관련 기능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811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11 채광장치 조작 종사자

81111 굴착기 조작원

81112 착암기 조작원

81113 채광기 조작원

81119 기타 채광장치 조작원

8112 광석 및 석재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121 절할기 조작원

81122 파쇄 및 분쇄기 조작원

81123 선광기 조작원

81124 세척기 조작원

81125 재단기 조작원

81126 연마기 조작원

81129 기타 광석 및 석재 가공장치 조작원

8113 유정 천공 및 시추장비 조작 종사자

81131 유정탐 조작원

81132 천공장비 조작원

81133 시추장비 조작원

81139 기타 유정천공 및 시추 장비 조작원

812 금속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21 광석 및 금속 용광로 조작 종사자

81211 금속 용광로 조작원

81212 제강로 조작원

81213 제련로 조작원

81219 기타 광석 및 금속 용광로 조작원

8122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 종사자

81221 금속용해로 조작원

81222 금속가열로 조작원

81223 열간압연기 조작원

81224 냉간압연기 조작원

81229 기타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원

8123 주조기 조작 종사자

81231 연속주조기 조작원

81232 주물주조기 조작원

8124 금속 열처리로 조작 종사자

81241 금속소둔로 조작원

81242 금속표면경화로 조작원

81249 기타 금속 열처리로 조작원

8125	금속인발 및 압출 종사자
81251	금속인발기 조작원
81252	금속압출기 조작원
81253	연선기 조작원
81259	기타 금속인발 및 압출기 조작원
813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31	유리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311	유리용해로 조작원
81312	유리성형기 조작원
81313	유리취주기 조작원
81314	유리인발기 조작원
81315	유리조각 및 식각기 조작원
81319	기타 유리 가공장치 조작원
8132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321	벽돌 및 타일로 조작원
81322	도자기로 조작원
81329	기타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원
8139	기타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391	점토제품 가공장치 조작원
81392	유리원료 혼합장치 조작원
81393	유리섬유제품 제조기 조작원
81394	유약제조기 조작원
81399	그 외 기타 유리 가공장치, 도기로 관련장치 조작원
814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8141	목재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411	제재기 조작원
81412	목재가공기 조작원
81413	목재건조기 조작원
81414	목재처리기 조작원
81415	단판절단기 조작원
81416	합판제조기 조작원
81417	목재칩 제조 및 마쇄기 조작원
81418	재생목재기 조작원
81419	기타 목재가공장치 조작원
8142	펄프제조장치 조작 종사자
81420	펄프제조장치 조작원
8143	종이제조장치 조작 종사자
81431	해리장치 조작원
81432	고해장치 조작원
81433	조성장치 조작원
81434	초지기 조작원
81435	재권치기 조작원
81439	기타 제지 관련장치 조작원

815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51	화학물 분쇄, 마쇄 및 혼합기 조작 종사자
81511	분쇄기 조작원
81512	마쇄기 조작원
81513	혼합기 조작원
81519	기타 화학물 분쇄, 마쇄 및 혼합기 조작원
8152	화학물 가열처리장치 조작 종사자
81521	조제장치 조작원
81522	하소장치 조작원
81523	가공로 조작원, 시멘트 제외
81524	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81529	기타 화학물 가열처리장치 조작원
8153	화학물 여과 및 분리기 조작 종사자
81531	여과기 조작원
81532	원심분리기 조작원
81533	원유처리장비 조작원
81534	화학물추출기 조작원
81539	기타 화학물 여과 및 분리기 조작원
8154	화학물증류 및 반응기 조작 종사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81541	화학물 증류기 조작원
81542	화학물 반응기 조작원
81543	증발기 조작원
81549	기타 화학물증류 및 반응기 조작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8155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장치 조작 종사자
81551	탈황처리기 조작원
81552	정제기 조작원
81553	증류기 조작원
81554	제어기 조작원
81555	배합기 조작원
81556	파라핀제조기 조작원
81559	기타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장치 조작원
8159	기타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591	화학물 표백기 조작원
81592	코크스제조기 조작원
81593	목탄생산기 조작원
81594	화학섬유생산기 조작원
81595	비료제조기 조작원
81596	고무가공장치 조작원
81597	방사성물질 가공기 조작원
81598	소금제조장치 조작원
81599	그 외 기타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16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 8161 발전장치 조작 종사자
 - 81611 화력발전장치 운전원
 - 81612 수력발전장치 운전원
 - 81613 원자력발전장치 운전원
 - 81614 발전터빈 조작용
 - 81615 배전반 조작용
 - 81616 급전 사령원
 - 81619 기타 발전장치 조작용
- 8162 보일러 조작 종사자
 - 81620 보일러 조작용
- 8163 소각로, 상하수 처리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 81631 공기압축기 조작용
 - 81632 펌프장 조작용
 - 81633 정수장치 조작용
 - 81634 소각장치 조작용
 - 81635 냉장·냉동장치 조작용
 - 81636 하수처리 장치 조작용
 - 81637 환기장치 조작용
 - 81639 기타 소각로, 상하수 처리 및 관련장치 조작용
- 81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 8171 자동조립라인 조작 종사자
 - 81710 자동조립라인 조작용
 - 8172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 81720 산업용 로봇 조작용

82 기계 조작용 및 관련 종사자

- 821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 8211 기계공구 조작 종사자
 - 82111 선반 조작용
 - 82112 평삭기 조작용
 - 82113 밀링기 조작용
 - 82114 드릴링기 및 보링기 조작용
 - 82115 금속연삭 및 광택기 조작용
 - 82116 프레스기 및 전단기 조작용
 - 82117 금속공작기 조작용
 - 82119 기타 기계공구 조작용
 - 8212 판금기 조작 종사자
 - 82121 차량 판금기 조작용
 - 82122 항공기 판금기 조작용
 - 82123 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용
 - 82124 보일러 판금기 조작용
 - 82129 기타 판금기 조작용

8213	시멘트 및 광물 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131	석재가공기 조작원
82132	인조석 제품 가공기 조작원
82133	콘크리트 제품 가공기 조작원
82134	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82135	석면시멘트 제품 가공기 조작원
82139	기타 시멘트 및 광물 제품용 기계 조작원
822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1	약제품 및 위생용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11	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82212	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82213	세제 생산기 조작원
82219	기타 약제품 및 위생용품용 기계 조작원
8222	탄약 및 폭약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21	탄약 제품용 기계 조작원
82222	폭약용 기계 조작원
82223	불꽃 제품용 기계 조작원
82229	기타 탄약 및 폭약용 기계 조작원
8223	금속완성, 도금 및 도포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31	금속 세척기 조작원
82232	전기 도금기 조작원
82233	용융 도금기 조작원
82234	금속 분무기 조작원
82235	금속 완성용 기계 조작원
82239	기타 금속완성, 도금 및 도포용 기계 조작원
8224	차량도장기 조작 종사자
82240	차량도장기 조작원
8225	사진처리기 조작 종사자
82251	사진처리기 조작원
82252	필름 생산기 조작원
82253	인화지 생산기 조작원
82259	기타 사진처리기 조작원
8229	기타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91	양초제조기 조작원
82292	리놀륨생산기 조작원
82293	연필제조기 조작원
82294	가스생산기 조작원
82299	그 외 기타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원
82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31	고무 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311	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82312	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82313	타이어 재생기 조작원

82314	고무 성형기 조작원
82315	고무 압출기 조작원
82316	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82317	고무 합성기 조작원
82319	기타 고무 제품용 기계 조작원
8232	플라스틱 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321	플라스틱 성형기 조작원
82322	플라스틱 압출기 조작원
82323	플라스틱 적층기 조작원
82324	플라스틱 사출기 조작원
82329	기타 플라스틱 제품용 기계 조작원
824	나무 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40	나무 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401	목공선반 조작원
82402	목재조각기 조작원
82403	목재완성기 조작원
82409	기타 나무 제품용 기계 조작원
825	인쇄, 제책 및 종이 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51	인쇄기 조작 종사자
82511	활판 인쇄기 조작원
82512	평판 인쇄기 조작원
82513	윤전 인쇄기 조작원
82514	옵셋 인쇄기 조작원
82519	기타 인쇄기 조작원
8252	제책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520	제책용 기계 조작원
8253	종이 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531	종이상자 및 봉투 제조기 조작원
82532	판지 라이닝기 조작원
82533	셀로판백 제조기 조작원
82534	위생용 종이 제품 제조기 조작원
82539	기타 종이 제품용 기계 조작원
826	섬유, 의복 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61	섬유 가공기계 조작 종사자
82611	섬유혼합기 조작원
82612	소면기 및 랩핑기 조작원
82613	연조기 조작원
82614	조방기 조작원
82615	정방기 조작원
82616	권사기 조작원
82617	연사기 조작원
82619	기타 섬유 가공기계 조작원

- 8262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 종사자
 - 82621 정경기 조작용
 - 82622 통경기 조작용
 - 82623 직조기 조작용
 - 82624 편직기 조작용
 - 82625 망제조기 조작용
 - 82629 기타 직조, 편직기 조작용
- 8263 표백, 염색기계 조작 종사자
 - 82631 표백기 조작용
 - 82632 염색기 조작용
 - 82639 기타 직물가공 기계 조작용
- 8264 재봉기계 조작 종사자, 직물 및 가죽
 - 82641 직물 제품용 재봉기계 조작용
 - 82642 가죽 제품용 재봉기계 조작용
 - 82643 신발재봉기계 조작용
 - 82644 자수재봉기계 조작용
 - 82649 기타 재봉기계 조작용
- 8265 모피 및 가죽가공기 조작 종사자
 - 82651 원피 제육기 및 재모기 조작용
 - 82652 가죽 무두질기 조작용
 - 82653 가죽 염색기 조작용
 - 82654 모피 완성기 조작용
 - 82659 기타 모피 및 가죽가공기 조작용
- 8266 세탁 및 관련 기계 조작 종사자
 - 82661 의복세탁기 조작용
 - 82662 드라이크리닝기 조작용
 - 82669 기타 세탁 및 관련 기계 조작용
- 8267 신발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 종사자
 - 82671 일반 신발생산기 조작용
 - 82672 스포츠 신발생산기 조작용
 - 82673 정형화 생산기 조작용
 - 82679 기타 신발제조 및 관련기계 조작용
- 8269 기타 섬유, 모피 및 가죽 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 82691 모자제조기 조작용
 - 82692 매트리스제조기 조작용
 - 82693 직물재단기 조작용
 - 82694 끈제조기 조작용
 - 82699 그 외 기타 섬유, 모피 및 가죽 제품용 기계 조작용
- 827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 8271 육류 및 어류 가공기계 조작 종사자
 - 82711 훈제기 조작용
 - 82712 햄, 소시지 제조기 조작용
 - 82713 통조림기 조작용

82714 살균기 조작용
 82715 냉동기 조작용
 82719 기타 육류 및 어류 가공기계 조작용
 8272 낙농제품 기계 조작 종사자
 82721 우유 살균기 조작용
 82722 분유 생산기 조작용
 82723 연유 생산기 조작용
 82724 버터, 치즈 제조기 조작용
 82725 아이스크림 제조기 조작용
 82729 기타 낙농제품 제조기 조작용
 8273 곡식 및 조미료 제분기 조작 종사자
 82731 도정기 조작용
 82732 제분기 조작용, 조미료 제외
 82733 조미료 제분기 조작용
 82739 기타 곡식 및 조미료 제분기 조작용
 8274 곡류제품 제조기 조작 종사자
 82741 빵·과자 제조기 조작용
 82742 사탕, 껌 제조기 조작용
 82743 초콜릿 제조기 조작용
 82744 면류 제조기 조작용
 82749 기타 곡류제품 제조기 조작용
 8275 과일, 채소 및 견과 가공기 조작 종사자
 82751 과일 및 채소 통조림기 조작용
 82752 과일 및 채소 살균기 조작용
 82753 과일 및 채소 냉장기 조작용
 82754 과일 및 채소 건조기 조작용
 82755 과일 및 채소 주스기 조작용
 82759 기타 과일, 채소 가공기 조작용
 8276 유지제조 기계 조작 종사자
 82761 식용유 착유기 조작용
 82762 식용유 정제기 조작용
 82763 마가린 제조기 조작용
 82769 기타 유지제조기계 조작용
 8277 설탕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82770 설탕제조 기계 조작용
 8279 기타 식품 가공기 조작 종사자
 82791 식사용 조제식품 가공기 조작용
 82792 강장식품 가공기 조작용
 82799 그 외 기타 식품 가공기 조작용
 828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8281 차, 커피 및 코코아 가공기 조작 종사자
 82811 커피원두 가공기 조작용
 82812 차 가공기 조작용

82813 코코아두 가공기 조작원
 82819 기타 차, 커피 및 코코아 가공기 조작원
 8282 양조, 주조 및 음료제조기 조작 종사자
 82821 맥아제조기 조작원
 82822 발효장비 조작원
 82823 배합장치 조작원
 82824 증류장치 조작원
 82825 포도주 제조장치 조작원
 82826 비알콜성 음료 생산장치 조작원
 82829 기타 양조, 주조 및 음료용 기계 조작원
 8283 조미식품 생산기 조작 종사자
 82831 조미식품 제조장치 조작원
 82832 식품첨가물 제조장치 조작원
 8284 담배 제조기 조작 종사자
 82841 엽연초 배합기 조작원
 82842 엽연초 절단기 조작원
 82843 엽연초 진공조절기 조작원
 82844 엽연초 제정기 조작원
 82845 담배생산기 조작원
 829 기타 기계 조작 종사자
 8291 전기·전자장비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82911 전기장비 제조기계 조작원
 82912 전자장비 제조기계 조작원
 8299 기타 기계 조작 종사자
 82991 주입, 포장 및 봉합기 조작원
 82992 케이블 및 배관 부설기 조작원
 82993 도로표시기 조작원
 82994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
 82995 병 세척기 조작원
 82999 그 외 기타 기계 조작원

83 조립 종사자

831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8311 자동차 조립 종사자
 83110 자동차 조립원
 8312 항공기 및 선박 조립 종사자
 83121 항공기 조립원
 83122 선박기관 조립원
 8313 기계 및 관련제품 조립 종사자
 83131 광산용 기계 조립원
 83132 농업용 기계 조립원
 83133 건설용 기계 조립원

- 83134 기계공구 조립원
- 83139 기타 기계 및 관련제품 조립원
- 832 전기 및 전자 장비 조립 종사자**
- 8321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가정용 제외
 - 83211 전기장비 조립원
 - 83212 영상, 음향장비 조립원
 - 83213 사무용기기 조립원
 - 83214 전자정밀기구 조립원
 - 83219 기타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원
- 8322 가정용 전기기구 조립 종사자
 - 83220 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 833 금속, 목재 및 기타 제품 조립 종사자**
- 8331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 종사자
 - 83311 금속 제품 조립원
 - 83312 고무 제품 조립원
 - 83313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 8332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 종사자
 - 83320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 8333 섬유, 가죽 및 관련제품 조립 종사자
 - 83330 섬유, 가죽 및 관련제품 조립원
- 8339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 83390 기타 제품 조립원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 841 철도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 8411 철도 기관사
 - 84111 열차 기관사
 - 84112 지하철 기관사
 - 84119 기타 철도차량 기관사
- 8412 화물열차 차장, 신호 및 수송 종사자
 - 84121 화물열차 차장
 - 84122 철도 신호원
 - 84123 철도 수송원
 - 84129 기타 화물열차 차장, 신호원 및 수송원
-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
- 8421 택시운전 종사자
 - 84210 택시 운전원
- 8422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 종사자
 - 84221 일반 승용차 운전원
 - 84222 경화물차 운전원
 - 84223 구급차 운전원

84224	우편배달차 운전원
84229	기타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원
8423	버스 및 승합차 운전 종사자
84231	시내버스 운전원
84232	시외버스 운전원
84233	고속버스 운전원
84234	관광버스 운전원
84235	승합차 운전원
84239	기타 버스 운전원
8424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 종사자
84241	일반 트럭 운전원
84242	유조차량 운전원
84243	트레일러 트럭 운전원
84244	덤프트럭 운전원
84245	레이콘차량 운전원
84246	광산왕복차 운전원
84247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
843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 종사자
8431	동력 농림업장치 운전 종사자
84311	농기계 운전원
84312	산림용 기계 및 임업장치 운전원
84319	기타 동력 농림업장치 운전원
8432	흙 운반 및 관련장치 운전 종사자
84321	굴삭기 운전원
84322	불도저 운전원
84323	준설기 운전원
84324	항타기 조작원
84325	도로정지기 운전원
84326	도로포장기 운전원
84327	터널굴착기 운전원
84329	기타 흙 운반 및 관련장치 운전원
8433	크레인, 호이스트 및 관련장치 운전 종사자
84331	브리지크레인 운전원
84332	타워크레인 운전원
84333	이동크레인 운전원
84334	호이스트 운전원
84335	리프트 조작원
84336	갑문 조작원
84339	기타 크레인, 호이스트 및 관련장치 운전원
8434	적재용 차량 운전 종사자
84340	적재용 차량 운전원
844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8440	선박감판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84401	감판장
84402	감판원
84403	등대지기
84404	바지선 선원
84409	기타 선박 감판관련 승무원

9 단순 노무 종사자

- 91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종사자
 - 911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 9111 가사 보조 종사자
 - 91111 가사 보조원
 - 91112 가사 쇼핑 대행원
 - 9112 건물 청소 종사자
 - 91121 사무실 청소원
 - 91122 아파트 청소원
 - 91129 기타 건물 청소원
 - 9113 호텔 및 음식점소 청소 종사자
 - 91131 호텔 및 숙박시설 청소원
 - 91132 병원 청소원
 - 91133 음식점소 보조원 및 청소원
 - 91139 기타 호텔 및 음식점소 청소원
 - 9114 차량 및 관련 청소 종사자
 - 91141 세차원
 - 91149 기타 차량 및 관련 청소원
 - 9115 세탁 및 다림질 종사자
 - 91150 세탁 및 다림질원
 - 912 건물관리, 경비 및 관련 종사자
 - 9121 건물관리 종사자
 - 91211 빌딩 관리인
 - 91212 공동주택 관리인
 - 91213 교구 관리인
 - 91219 기타 건물 관리인
 - 9122 수위, 경비 및 관련 종사자
 - 91221 수위 및 경비원
 - 91222 물품 보관원
 - 91223 집표원
 - 91224 공원 관리원
 - 91225 주차장 관리원
 - 91229 기타 수위, 경비 및 관련 종사원
 - 913 배달, 운반 및 검침관련 종사자
 - 9131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 91311 우편물 집배원
 - 91312 신문 배달원
 - 91313 물품 배달원
 - 91314 수하물 운반원

91319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9132 계기검침 종사자
 91320 계기검침원
 9133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급 종사자
 91330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급원
914 환경미화 및 관련 종사자
 9141 쓰레기 수거 종사자
 91410 쓰레기 수거원
 9142 거리 미화원 및 관련 종사자
 91420 거리 미화원 및 관련 종사원
915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150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1501 구두 미화원
 91502 심부름원
 91503 물품 분류원
 91509 그 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노무자

92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20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201 농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2011 전답작물관련 단순 노무자
 92012 파수작물관련 단순 노무자
 92013 축산관련 단순 노무자
 92019 기타 농업관련 단순 노무자
 9202 임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2020 임업관련 단순 노무자
 9203 어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2030 어업관련 단순 노무자

93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0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01 단순 조립노무 종사자
 93010 단순 조립원
 9302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
 93021 포장원
 93022 상표 부착원
 9309 기타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091 제품 운반원
 93099 그 외 기타 제조관련 단순 노무자

- 94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941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9411 광업 단순노무 종사자
 - 94110 광업 단순 노무자
 - 9412 건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94121 교통 정리원
 - 94122 철로 보수원
 - 94123 토공 작업원
 - 94124 건물건설 잡역부
 - 94125 건물건축 운반인부
 - 942 운수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9421 화물취급 종사자
 - 94211 부두 하역원
 - 94212 육상화물 하역원
 - 94213 선박 하역원, 가스
 - 94214 화물 운반원
 - 94219 기타 화물취급원
 - 9422 교통 지도원
 - 94220 교통 지도원

A 군인

A1	군인
A11	장교
A111	영관급 이상
A1110	영관급 이상
A112	위관급
A1120	위관급
A12	기타 군인
A120	기타 군인
A1200	기타 군인

부록 2.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 부록 2-1. 별지 제3호서식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 부록 2-2. 별지 제5호서식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 부록 2-3. 별지 제7호서식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및의료보험증발급신청서
- 부록 2-4. 별지 제8호서식
의료보험증
- 부록 2-5. 별지 제1호서식
의료보험적용사업장통보서
- 부록 2-6. 별지 제2호서식
임의계속피보험자적용신청서
- 부록 2-7. 별지 제11호서식
요양비지급신청서
- 부록 2-8. 별지 제12호서식
분만비지급신청서
- 부록 2-9. 별지 제13호서식
자격상실후계속요양급여신청서
- 부록 2-10. 별지 제14호서식
자격상실후분만급여신청서
- 부록 2-11. 별지 제15호서식
장제비지급신청서
- 부록 2-12. 별지 제16호서식
분만수당지급신청서
- 부록 2-13. 별지 제17호서식
본인부담급보상금지급신청서
- 부록 2-14. 별지 제18호서식
제3자행위로인한급여신고서

여 백

피 보 험 자 자 격 취 득 신 고 서																	
사업장 명칭		산업분류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자격취득자수		계	남		여	피부양자수		계	남		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우편 번호	주소(체류지)	등급	보수월액	자격취득 년 월 일			피부양자수	종전 의료보험조합 명 칭 자격구분		확인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보험자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귀 하

구 비 서 류	1.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2.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 재 요 령 등	1. 자격취득일자는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 기재하십시오. 2. 우편번호, 주소는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3. 종전 의료보험조합의 명칭과 자격(피보험자, 피부양자)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4. 피부양자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	-----------------------	--

(뒷쪽)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서

[illegible]

(앞쪽)

피 보 험 자 자 격 상 실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칭			산 업 분 류		기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자 격 상 실 자 수		계		남		여	피 부 양 자 수		계		남		여	
의 료 보 험 증 회 수		총 대 상		회 수		미 회 수	원 격 지 의 료 보 험 증 회 수		총 대 상		회 수		미 회 수	
연 번	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직 업 분 류	우 편 번 호	주 소 (재 류 지)	자 격 상 실			상 실 사 유	의 료 보 험 증		확 인	
							년	월	일		반 환	미 반 환		
의 료 보 험 법 시 행 규 칙 제 6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피 보 험 자 자 격 상 실 을 위 와 같 이 신 고 합 니 다.														
신 고 인 (사 용 자) (서 명 또는 인)														
○ ○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귀 하														
구 비 서 류	1. 의 료 보 험 증 매 2. 원 격 지 의 료 보 험 증 매			기 재 요 령	1. 자 격 상 실 일 자 는 퇴 직 한 날 의 다 음 날 로 기 입 하 십 시 오. 2. 우 편 번 호, 주 소 는 자 격 상 실 일 현 재 우 편 번 호, 주 소 를 기 입 하 십 시 오. 3. 의 료 보 험 증 미 반 납 시 는 확 인 서 를 첨부 하 십 시 오.									

(뒷쪽)

피 보 험 자 자 격 상 실 신 고 서

[illegible]

부록 2-3.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8. 12. 8>

사 업 장	명 칭											
	산업분류											
	기 호											
피보험자	의료보험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분류	자격취득일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피부양자 자격 ☐ 취득 ☐ 상실 ☐ 의료보험증 ☐ 원격지 ☐ 기재변경 ☐ 재교부(본증, 원격지증) ☐											
피부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관계	우편번호	주 소(체류지)	자격득실일	상실사유	직업분류 변경자	원격지 대상자	종전 조합명	
원격지 신청사유		☐ 다른 지역 부양 ☐ 취 학 ☐ 양 육 ☐ 기타										
기재사항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재교부 신청사유		☐ 잃어버림 ☐ 닳아 못쓰게 됨 ☐ 기재란 부족 ☐ 검인란 부족 ☐ 기타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 및 의료보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용자경유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귀 하												
구 비 서 류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				원격지의료보험증 발급신청				의료보험증기재사항변경 및 재교부 신청			
	1. 의료보험증(피보험자와 피부양자자격 동시 취득시는 제외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를 말합니다) 3. 기타 피부양자인정기준에 특별히 요하는 서류				1. 의료보험증(본실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원격지의료보험증 교부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등 관계서류 1부				1. 의료보험증(본실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기재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재교부신청시에는 신고서만 작성합니다)			
기재 요령	1. 신청용도별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보험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시에는 피부양자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직업분류 변경자는 기재사항 변경사유에 변경 전 및 후의 직업분류를 기록합니다. 3.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소"는 "체류지"를, "주민등록표등본"은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말합니다.											

31312·41711민

98.10.20. 개정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부록 2-4.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8. 12. 8>

(앞쪽)

보험급여기록(외래)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를 받은 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명	진료일자	요양기관기호
	투약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31312-41821일
98.10.20. 개정승인

지켜야 할 사항
1. 진료를 받기 전에 의료보험증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등)를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입원의 경우에는 농촌·도시 구분이나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20% 외래의 경우에는 농촌·도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특히 보건기관이나 의원·약국을 이용하면 부담이 적은 정액제를 적용받습니다.
3. 조합이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00년도의 요양급여기간은 투약일수를 포함하여 1인당 연간 000일 이내입니다. 다만, 65세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등은 제한 없습니다.
4. 교통사고나 제3자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의료보험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조합에 이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조합에 의료보험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의료보험증을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한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오니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청색의료보험 마크전면 배다인쇄
(1, 2면 태두리 청색 인쇄)

의료보험증
(마크)
〇〇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전화번호)

74mm×105mm
OCR용지 105g/m²

(뒷쪽)

[illegible]

(뒷쪽)

보험급여기록(외래)		
성명	진료일자 투약일수	요양기관기호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뒷쪽)

보험급여기록(외래)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료 받은 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명	진료일자	요양기관기호
	투약일수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뒷쪽)

피 보 험 자			
조합기호		증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 업 분 류			
사 업 장 명 칭			
산 업 분 류			
자 격 취 득 일 자			
발 행 일 자			
검 인 란 검인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뒷쪽)

피 부 양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관 계	자격취득일자
		직업분류	

부록 2-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 12. 8>

의 료 보 험 적 용 사 업 장 통 보 서				
사 업 장 수		사업의종류		산업분류
본사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용자성명			적용 해당일자	
사 무 소 또는 사 업 소				
명 칭	소 재 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평균임금				
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보험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귀 하				

31312-41111민

98.10.2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부록 2-6.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8. 12. 8>

* 란은 조합이 기재합니다.

임 의 계 속 피 보 험 자 적 용 신 청 서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종전 의료보험증번호					
주 소 (체류지)	(전화 :)				
퇴직전 사업장 명 칭		산업 분류		퇴직전 사업장 소 재 지	
퇴 직 사 유					
퇴직전 사업장 재직기간		계 속 적 용 신 청 기 간			
*퇴직월을 제외한 전 2월간 평균 보험료					
* 보험료 총액		납 부 방 법	일시납부(), 분할납부()		
* 보험료 경감 대 상 여 부	대 상 ()	비 대 상 ()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의계속피보험자 적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귀하					
참 고 사 항	1. 임의계속피보험자 적용신청은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날(퇴직일의 다음날)부 터 14일이내에 종전 소속의료보험조합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는 계속적용 신청기간분의 보험료를 신청시에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납 부할 경우에는 3월분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 경감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수 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구직등록신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임의계속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면 종전 피부양자의 자격은 계속 적용되 며, 신규 피부양자자격취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1312-41211민
98.10.2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부록 2-7.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8. 12. 8>

* 란은 조합이 기재합니다.

요 양 비 지 급 신 청 서						
피보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주소(체류지)			의료보험증번호		
수 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피 보험 자 와의 관계		주소(체류지)			
	상 병 명		진 료 기 간	. . .부터 일간		
	진 료 과 목		진 료 구 분	1.입원 2. 외래		
요양받은 기관명칭						
요양비 발생사유						
* 진 료 비 총 액		원	*심사결정액	본인부담금	원	
				지 급 금	원	
지급금융기관 및 지점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양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 ○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귀 하						
구비서류	1. 진료비명세서와 영수증(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영수증을 말합니다) 각 1부 2.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1312-42111민

210mm×297mm

98.10.20.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제활용품))

부록 2-8.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98. 12. 8>

* 란은 조합이 기재합니다.

분 만 비 지 급 신 청 서						
피보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주소(체류지)			의료보험증번호		
분 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피 보 험 자 와 의 관 계		주소(체류지)			
	자격취득일자	. . .	자격상실일자			
분만내역	분 만 일	. . .	지 급 기 준	1. 첫 번째 자녀 2. 두 번째 자녀 이후		
	분만장소		분 만 구 분	1. 자연·제왕절개분만 2. 쌍태아분만 3. 사산		
* 분 만 비 지 급 액		원	* 지급일자	. . .		
			* 지급방법	1. 현금 2. 온라인		
지급금융기관 및 지점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만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분만자와의 관계 ○ ○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귀 하						
구비서류	1. 분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산 또는 출생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1312-42211민

98.10.2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부록 2-9. [별지 제13호서식]

자격상실후계속요양급여신청서												
* 일련번호		전보험자기호		전보험자명칭								
피보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분류		의료보험증번호						
주소				희망진료권								
자격취득일자		자격상실일자		자격취득기간	년 개월							
자격상실 당시 상병에 대한 현재까지 요양 급여기간	요양기관명	입원일수	퇴원 후 투약일수	외래진료 일수(1)	외래투약 일수(2)	(1)과(2)의 중복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자격상실 당시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	요양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상병명			구 분	1.입원 2.외래							
	요양급여개 시일			요양급여 종료예정일								
	진료의사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격상실후의 계속요양급여를 받고자 급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귀 하 급 여 증 명 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상병명</td> <td></td> <td>*요양급여 유효기간</td> <td>~ 까지</td> <td>* 진료권 (기관)</td> <td></td> </tr> </table>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직인 주 : 1. 이 신청서는 2부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보험자 보관용, 1부는 요양기관 제출용입니다. 2. *란은 보험자가 기재합니다. 3. 이 급여증명서는 의료보험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병명		*요양급여 유효기간	~ 까지	* 진료권 (기관)	
* 상병명		*요양급여 유효기간	~ 까지	* 진료권 (기관)								

31312-42311민
'94. 8.2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부록 2-10.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8. 12. 8>

자 격 상 실 후 분 만 급 여 신 청 서							
* 일련번호		전보험자기호		전보험자명칭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의료보험증번호	
주소(체류지)							
자격취득일자		자격상실일자		자격취득기간		년	월
분만에정일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격상실후의 분만급여를 받고자 급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귀 하							
급 여 증 명 서 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후의 분만급여를 증명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상분만하는 경우에는 급여유효기간이 2일 더 연장되며, 이상분만하는 경우에는 분만후 입원치료기간까지 연장됩니다.							
급여종별	분 만		* 분만급여 유효기간	: : ~ : : 까지			
○ ○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인							
주 : 1. 이 신청서는 2부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보험자 보관용, 1부는 요양기관 제출용입니다. 2. 이 급여증명서는 의료보험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312-42411민

98.10.2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부록 2-11.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98. 12. 8>

* 란은 조합이 기재합니다.

장 제 비 지 급 신 청 서						
피보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주소(채류지)			의료보험증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사 망 일 자		사 망 장 소			
	사 망 원 인					
* 장 제 비 지 급 액		원	* 지급일자			
			* 지급방법	1. 현금 2. 온라인		
지급금융기관 및 지점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 ○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귀 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의료보험증					

31312-42511핀

98.10.2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부록 2-12.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8. 12. 8>

* 란은 조합이 기재합니다.

분 만 수 당 지 급 신 청 서						
피보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주소(체류지)			의료보험증번호		
분 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피보험자 와의 관계		주소(체류지)			
	자격취득일자	. . .	자격상실일자			
분만내역	분 만 일	. . .	지급기준	1. 첫번째 자녀 2 두번째 자녀 이후		
	분만장소		분만구분	1 자연·제왕절개분만 2 쌍태아분만 3 사산		
* 분만수당지급액		원	* 지급일자	. . .		
			* 지급방법	1. 현금 2. 온라인		
지급금융기관 및 지점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만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분만자와의 관계 ○ ○ 의 료 보 험 조 합 대 표 이 사 귀 하						
구비서류	1. 분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산 또는 출생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1312-42611민

98.10.2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부록 2-13.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 12. 8>

* 란은 조합이 기재합니다.

본인부담금보상금지급신청서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주소(채류지)				의료보험증번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피보험자와의 관계		주소(채류지)			
	자격취득일자		자격상실일자			
상병명			진료기간	(일간)		
요양기관명			소재지			
진료비용액			* 본인부담금 지급액			
지급금융기관 및 지점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보상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1312-42711민
98.10.2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부록 2-14.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98. 12. 8>

* 란은 조합이 기재합니다.

제3자 행위로 인한급여신고서

조합기호		조합명칭		의료보험증번호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분류
	주소(채류지)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진료기간			
상병명		* 상병분류기호		* 상병외인코	
가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일시	
요양기관 (명칭과 소재지)					
사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주소(채류지) 수진자와의 관계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귀하					
주 : 이 신고서는 보험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1312-42811민

98.10.2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부록 3.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부록 3-1. 별지 제1호서식

의료보험증발급신청서

부록 3-2. 별지 제4호서식

의료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부록 3-3.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근무처변동등통보

부록 3-4. 별지 제2호서식

의료보험증

여 백

부록 3-2. [별지 제4호서식]

의료보험증기제사항변경신청서											
일련 번호											
① 지역 피보험자 □		②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 □									
세 대 주	①의료보험 증 번 호										
	②성 명										
	③주민등록 번 호										
	직업분류										
대 상 자	⑧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직업 분류	⑩지역피보험자 일부의 자격상실, 공무원·교직원피부양자의 자격상실 □			⑪기타 기제사항 변경 □				
				⑪상실일	⑫상실사유	부호	⑬의료보험증 미반납사유	장 제 비 신청여부	⑭변경신청항목	부호	⑮변경신청후 내용
접 수 일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제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의료보험증 발급매수		주 : (1) 사망으로 인한 신청시에는 뒷면의 “장제비 지급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증 반납매수		(2) 굵은 선으로 된 란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장 귀하					

31312-49621인
'98.10. 1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 일련번호												결재		담당자	팀장	부장	지사장
* 접수번호																	
중 번호 (기관기호)																	
* 접수일	사망당시 세대주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분류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분류	* 관계구분		
															1 2		
사망일	사망장소	사망구분	사망원인				* 의료보험증반납				* 지급금액				* 지급 의뢰일		
2	1. 자택 2. 의료기관 3. 기타	1. 병사 2. 사고사	상병명 * 분류기호				의료보험증 원격지증				십 만 천 백 십 원						
사 고 경 위																	
거래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 직금통장, 거래정지된 계좌등은 입금불가											
신청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구비서류	○ 의료보험(원격지)증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이 동재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앞면 의료보험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작성요령

【공통사항】 지역피보험자는 ① 지역피보험자에 ②표시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는 ②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에 ②표시한다.

① ~ ⑦ : 지역피보험자는 세대주의 중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는 소속기관기호·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⑧ ~ ⑨ : 신청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지역피보험자 일부상실,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 상실】 ⑩에 ②표시합니다

⑪ :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유를 기재합니다

⑫ : 피보험자 자격상실사유를 기재합니다

가. 지역피보험자 일부상실 : 사망<03>, 의료보호책정<04>, 직장피보험취득<05>, 직장피부취득<06>, 행방불명<09>, 직권말소<14>, 국적상실<17>, 외국인 출국<18>, 이민출국<19>, 영주권자보험료채납<20>

나.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 상실 : 사망<03>, 의료보호책정<04>, 직장피보험취득<05>, 직장피부취득<06>

⑬ : 중미납사유(분실, 멸실 등)를 기재합니다

* 지역피보험자중 세대주가 사망, 행방불명, 직권말소 또는 국적상실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기재사항변경과 동시에 세대주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기타 기재사항 변경】 ⑭에 ②표시한다.

⑮ ~ ⑯ : 변경신청항목 및 변경신청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변경신청항목<부호> : 성명<01>, 주민등록번호<02>, 군번(순번)<03>, 세대주(피보험자)와의 관계<04>, 직업분류<05>, 군입대일<10>, 군전역일<11>, 재취득일<13>, 원격지코드<20>, 장애인종별부호·등급·등록일<34>, 외국인코드<35>

【기타 기재사항 변경신청 구비서류】 의료보험(원격지)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기 관 명 우000-0000/주소 /전화()000-0000/전송000-0000/담당자 000		결 재	담당자 팀 장 부 장 지사장	전 결		
---	--	--------	--------------------	-----	--	--

일련번호		문서번호 : 제 목 :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근무처변동등통보									
기	① 기 호										
관	② 명 칭										
	산업분류										

구분	성명	⑤변동사유	⑦변동 년월일	직업분류	⑧전근처명	⑨회계명	⑫직종명	⑬직급명	⑮호봉	⑯근무연수	⑰변동전 보험료	⑱감면 사유	⑳차기승급 연월	㉑단위기관기호	㉒의료보험증 반납여부 (미반납사유)
④주민등록번호	⑥변동부호				⑩전근무처 기호	⑪회계부호	⑫직종부호	⑬직급부호	⑮호봉 부호	⑯차기근무연 수변동연월	⑰변동후 보험료	⑱감면 부호			
1															
2															
3															
4															

접수일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무처 변동 등을 통보합니다.														
의료보험증 발급매수	주 : 굵은 선으로 된 란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증 반납매수	기관장 또는 학교경영자 (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장 귀하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일반 휴직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휴 직 자 복 직 통 보 내 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업분류	신 고 구 분		당월보험료	미 납 사 항			납 부 구 분		납 부 분 할	
			최 초	변 경		미납기간(년월)	월 수	금 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회 수	1회불입액
	-					~						
	-					~						

※ 작 성 요 령

- ① ~ ④ : 기관(학교)의 기호, 명칭, **산업분류**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분류**를 기재합니다.
- ⑤ ~ ⑦ : 변동사유<부호>를 기재하고, 변동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변동사유<부호>: 선입<1>, 급여·회계 변동<2>, 감면사유 발생<3>, 차기승급연월 정정<4>, 단위기관 변동<5>, **직업분류 변동<6>**
 근무연수 및 차기근무연수 변동연월<7>, 봉급 지급일이전 전입자로 전출기관에서 보험료 납부<21>
 *변동사유<부호>중 <4>, <5>를 제외한 변동사유 <부호>를 신고하는 경우 ⑧근무연수 및 ⑨차기근무연수변동연월을 기재합니다.
 *보험료 변동없이 근무연수 및 차기근무연수 변동연월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7>을 기재하고, 보험료와 근무연수 및 차기근무연수 변동연월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2>를 기재합니다.
- ⑧ ~ ⑨ : 전입시 전근무처 명칭과 기호를 기재합니다.
- ⑩ ~ ⑪ : 보험료변동시 실무편람과 보험료조견표를 참조하여 회계명<부호>, 직종명<부호>, 직급명<부호>, 호봉<부호>을 기재합니다.
- ⑫ ~ ⑬ : 근무연수 및 차기근무연수 변동연월을 정정신고 할 경우 실제근무연수 및 해당 연월을 기재합니다.
- ⑭ ~ ⑮ : 변동전, 변동후 보험료를 기재합니다
- ⑯ ~ ⑰ : 감면사유<부호>를 기재합니다.
 *감면사유<부호>: 군입대<1>, 해외근무(전액)<2>, 해외근무(반액)<3>, 도서벽지근무<4>, 공익요원근무<5>, 휴직<6>, 상근예비역입대<7>, 복직<8>, 감면해제<9>
 ⑱ : 차기승급연월을 정정 신고할 경우 해당 연월을 기재합니다.
 ⑲ : 공단이 부여한 단위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⑳ : 군입대, 상근예비역 소집, 해외근무의 경우 의료보험증을 첨부하며, “○” 표시하고, 미반납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군제대 복직자의 경우 전역증빙서류(전역일 확인용)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록 3-4.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보험급여기록(외래)			보험급여기록(외래)			유 의 사 항	의료보험증
성 명	진료일자 투약일수	요양기관기호	성 명	진료일자 투약일수	요양기관기호		
	()일			()일		1.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 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합니다. 2.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보험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20%, 외래의 경우 요양 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4. 보험자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요양 급여 기간은 투약일수를 포함하여 '98년의 경우 1인당 300일이내이고, '99년 1월 1일부터는 330일이내입니다. 다만, 65세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자는 요양급여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5.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6. 의료보험증에 기록된 내용이 틀리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임의로 고치거나 마시고 이를 공단에 알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21-749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9

31312-49721민
98.10.1 승인

325mm×127mm
(보존용지(1종) 120g/㎡)

(뒷 쪽)

피보험자		피부양자				보험급여기록(입원)			보험급여기록(외래)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직업 분류	급여개시 유효일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받은 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받은 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성명	입원일자 입원일수	요양기관기호	성명	진료일자 투약일수	요양기관기호
직업분류							()일			()일	
증번호							()일			()일	
기관기호							()일			()일	
산업분류							()일			()일	
급여개시유효일							()일			()일	
특기사항							()일			()일	
발행일자:							()일			()일	
발행지사:							()일			()일	
전화:							()일			()일	

31312-49721 민
98.10.1 승인

325mm × 12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부록 4. 진료비명세서

부록 4-1. 진료비명세서: 입원

부록 4-2. 진료비명세서: 외래

여 백

부록 4-1. 진료비명세서: 입원

서 식 번 호		G	I	0	2	진 료 비 명 세 서						요 양 취 급 기 관						
보 험 자 소속기관	기 호											지 정 번 호						
	명 칭																	
피보험자성명						의료보험증번호								명 칭				
수진자 성명						-	직 업 분 류											
상 병 명 또 는 분 만						분류기호	수술	진료과목	상해외인	특정기호	당월진료 개시일	당월진료기간 (투약일수포함)	진 료 결 과					
													일	계속 1	이송 2	회송 3	사망 4	기타 5
													일					
													일					
													일					
													일					

부록 4-2. 진료비명세서: 외래

서 식 번 호		G	I	0	3	진 료 비 명 세 서						요 양 취 급 기 관					
보 험 자 소속기관	기호				지 정 번 호												
	명칭																
피보험자성명					의료보험증번호					명 칭							
수진자 성명							-	직 업 분 류									
상 병 명 또 는 분 만					분류기호	수술	진료과목	상해외인	특정기호	당월진료 개시일	당월진료기간 (투약일수포함)	진 료 결 과					
												일	계속 1	이송 2	회송 3	사망 4	기타 5
												일					
												일					
												일					
												일					
												일					